

제367회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회사무처

일 시 2019년3월26일(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갈등기본법안
6.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
7. 세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
19.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 가.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
 - 라.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
20. 업무현황 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국가보훈처
 - 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 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 독립기념관
 - 아. 88관광개발(주)

상정된 안건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4
 - o 간사(유동수) 인사 4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정태욱·주호영·김승희·홍일표·김영우·이주영·이종명·민경욱·정갑윤·김학용 의원 발의) 4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정미·홍일표·유승희·이원욱·이용득·윤영일·윤호중·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 4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4
5.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장제원·유승민·김현아·주호영·정병국·박명재·임이자·홍문표·성일종·경대수 의원 발의) 4
6.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석호·김명연·이채익·박맹우·조경태·문진국·김정재·김석기·원유철·이종명·김재경 의원 발의) 4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정종섭·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안규백 의원 발의) 4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 4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이재정·윤호중·김현권·윤영일·우원식·이원욱·김병기·이춘석 의원 발의) 4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4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4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찬대·민경욱·정진석·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최교일·이주영 의원 발의) 5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민경욱·최교일·박찬대·이주영 의원 발의) 5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5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5
18.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5
19.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6
 - 가.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윤일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 라.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정태욱·주호영·김승희·홍일표·김영우·이주영·이종명·민경욱·정갑윤·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7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정미·홍일표·유승희·이원욱·이용득·윤영일·윤호중·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7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7

5.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장제원·유승민·김현아·주호영·정병국·박명재·임이자·홍문표·성일종·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7

6.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석호·김명연·이채익·박맹우·조경태·문진국·김정재·김석기·원유철·이종명·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7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정종섭·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7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7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이재정·윤호중·김현권·윤영일·우원식·이원욱·김병기·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7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7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7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7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찬대·민경욱·정진석·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최교일·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7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민경욱·최교일·박찬대·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7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7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7

18.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7

20. 업무현황 보고 …… 7

가. 국무조정실

나. 국무총리비서실

다. 국가보훈처

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 독립기념관

아. 88관광개발(주)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민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과 법률

안과 청원을 상정한 다음 청원심사기간을 연장하고 국무조정실 등 소관 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현진 입법조사관보입니다.

다음 이주혁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채정현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새로 오신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을 성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

(10시05분)

○위원장 민병두 의사일정 제1항 간사 및 소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개선의 건은 정재호 위원이 교섭단체 간사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선임하되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추인하여 간사로 선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유동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유동수) 인사

○위원장 민병두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유동수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수 위원 정무위원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간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김종석 간사님, 유의동 간사님을 모시고 또 우리 정무위 위원님들과 함께 가장 원만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감사합니다.

다음 소위 위원 개선의 건은 김종석 위원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직에 대한 사임을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김종석 위원을 대신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김용태 위원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정태욱·주호영·김승희·홍일표·김영우·이주영·이종명·민경욱·정갑윤·김학용 의원 발의)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이정미·홍일표·유승희·이원욱·이용득·윤영일·윤호중·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5.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장제원·유승민·김현아·주호영·정병국·박명재·임이자·홍문표·성일종·경대수 의원 발의)

6.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석호·김명연·이채익·박맹우·조경태·문진국·김정재·김석기·원유철·이종명·김재경 의원 발의)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정종섭·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안규백 의원 발의)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이재정·윤호중·김현권·윤영일·우원식·이원욱·김병기·이춘석 의원 발의)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연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정부 제출)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찬대·민경욱·정진석·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최고일·이주영 의원 발의)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민경욱·최고일·박찬대·이주영 의원 발의)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18.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7항까지 총 16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13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가보훈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군복무 중에 중증·난치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가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등의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들 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단말기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15건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상정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 전문위원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 5건과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 11건 및 청원 1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중 국무총리로 하여금 소관 연구기관의 결산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결산심의 과정에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타당한 입법이지만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결산서의 제출시기도 5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기본법안은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포함한 갈등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입법취지의 법안으로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등 5건과 공론화위원회의

도입과 관련하여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회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3건이 각각 우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제정안은 이들 법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는 비상이 중증·난치성 질환자인 제대군인에 대하여 위탁병원 진료비도 감면해 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병원 접근성을 높여 진료 편의를 제공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제대군인 등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을 허용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 수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려고 등록 신청을 한 경우 그가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 확인 등의 필요서류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사실 확인과 관련된 현실적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신속한 사실 확인 통지 의무만을 규정할 경우 법률과 실제 현실 간의 괴리 현상이 지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먼

저 의결하고 대체토론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업무현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과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16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마치는 것을 전제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법안심사제1소위원장님과 유의동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님들, 그리고 김정훈 청원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청원심사소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

가. 군 휴가중 폭행사건에 관한 청원(윤일규 의원의 소개로 제출)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이학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

라.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 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민병두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청원심사기간 연장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에 따라 청원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장기간 심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4건의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2020년 5월 29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정태욱·주호영·김승희·홍일표·김영우·이주영·이종명·민경욱·정갑윤·김학용 의원 발의)(계속)
- 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한정에·이정미·홍일표·유승희·이원욱·이용득·윤영일·윤호중·김상희·신창현 의원 발의)(계속)
-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5.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김영우·장제원·유승민·김현아·주호영·정병국·박명재·임이자·홍문표·성일중·경대수 의원 발의)(계속)
- 6.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강석호·김명연·이채익·박맹우·조경태·문진국·김정재·김석기·원유철·이종명·김재경 의원 발의)(계속)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정종섭·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유동수·서영교·박찬대·추혜선·박정·이찬열·신창현·이동섭·이개호·안규백 의원 발의)(계속)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이학영·최인호·이재정·윤호중·김현권·윤영일·우원식·이원욱·김병기·이춘석 의원 발의)(계속)
- 11.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

걸·정인화·박주현 의원 발의)(계속)

- 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박찬대·민경욱·정진석·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최교일·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홍일표·안상수·김기선·김진태·윤상현·홍문표·정우택·민경욱·최교일·박찬대·이주영 의원 발의)(계속)
- 1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계속)
- 18. 참전명예수당 인상·전투수당 지급 및 병급규제 철폐에 관한 청원(경대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계속)
- 20. 업무현황 보고
 - 가. 국무조정실
 - 나. 국무총리비서실
 - 다. 국가보훈처
 - 라. 가슴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출연연구기관
 - 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사. 독립기념관
 - 아. 88관광개발(주)

○위원장 민병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현황 보고는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등 총 31개 소관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정부위원회 관례에 따라 국무조정실 등 4개 정부부처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보훈처 소관 3개 단체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략한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23개 정부출연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를 하는 기관장께서는 현

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기관장 출석과 관련하여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성기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를 위하여 오전 회의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여 교섭단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이를 양해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입니다.

평소 국무조정실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정무위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 국무조정실장으로 부임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국무조정실 직원 모두는 소관 업무를 포함하여 국정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무조정실이 국무총리를 충실히 보좌하고 국정운영의 중추기관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무조정실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 영역에 걸친 주요업무와 최근 현안과제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 지원입니다.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례회동, 현안 점검조정회의, 고위당정청회의 등 국정협의체를 통해 현안을 적극 해결하고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정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과 갈등 과제는 국조실 주도로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는 한

편 국회·언론·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갈등관리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국책사업 중 갈등이 표면화되거나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갈등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금년 초에 28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갈등관리시스템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혁신 추진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혁신과 민생 분야에서 18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였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고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제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나가는 일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대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규제혁신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 관리 및 평가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제별로 정기점검,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각 부처의 이행을 독려하고 장애 요인은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하는 등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평가 시에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평가 등급을 세분화하고 평가 결과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정운영 성과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마련한 공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이행 상황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국책사업 등 국가재정 투입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극행정, 관행적 비위 등도 엄정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 세종시 정착, ODA 추진, 새만금사업 추진, 주한미군기지의 이전, 정부출연연구기관 관

리, 기후변화 대응, 세월호 관련 후속조치 추진, 국가 테러대응체계 확립 및 납세자 권리구제 등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입니다.

지난 2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기획단이 출범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집중 점검·보완하는 한편 금년 내로 기존 대책 보완, 사각지대 관리, 국외 미세먼지 대응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실행하여 국민들의 우려와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성 예정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와의 역할도 명확히 정립하면서 조속히 출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SOC 추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고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의료·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집중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 생활SOC협의회와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설 복합화와 주민 참여 촉진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금년 사업예산도 신속 집행 중입니다. 4월 중에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입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TF를 구성하여 753개 작업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3월 19일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 내용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통화입니다.

정부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하되 블록체인 산업은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ICO 제도화 문제는 실태조사 결과 투자위험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과 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가상통화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무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국조실의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무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병환 국무1차장입니다.

차영환 국무2차장입니다.

임찬우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종성 정부업무평가실장입니다.

이련주 규제조정실장입니다.

최창원 경제조정실장입니다.

윤창렬 사회조정실장입니다.

홍승욱 부패예방감시단부단장입니다.

민지홍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입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입니다.

문영기 대테러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욱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예.

○정태욱 위원 업무보고 상세하게 받는 것도 좋고 한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면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가급적 서면으로 대체하고, 간략하게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지금 서면에 있는 이야기, 다 신문에 났던 이야기 또 들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매년 첫 임시국회에서는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장께서 상세하게 지금 보고를 하셔서 가지고 제가 다른 분들 원고를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해서 끝내고 4개 기관만 추가로 업무보고를 듣고 나머지 기관은 인사 말씀 듣는 것으로 하기로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국무총리비서실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총리께서 행정부를 통할, 원활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현장과 민생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은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유념하여 비서실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을 위한 걸음 더 나아가는 국무총리비서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평소 국무총리비서실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민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무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무총리비서실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평오 민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용호 정무실장과 김성재 공보실장은 어제 국무총리 해외순방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8년은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에 힘입어서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정성껏 보답하고 보훈가족에게 힘이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적기에 지급하고, 국립묘지도 새롭게 확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과 의병 독립운동가 2000여 분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한층 더 도약하는 국가보훈처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새겨두고 애국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계승하며 보훈가족 한 분 한 분의 희생과 헌신에 따뜻하게 보답하는 보훈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가보훈처의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기억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은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행사로 거행합니다.

국가유공자 명패도 독립유공자부터 6·25 참전 유공자까지 한 분 한 분 정성을 담아 달아 드리겠습니다.

둘째,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을 합당하게 예우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더욱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00여 명의 독립유공자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서훈자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도 실시합니다. 보상 수준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여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분들을 마지막까지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올해 10월에 국립괴산호국원을 개원하고 국립연천현충원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한편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참전용사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보훈단체 혁신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보훈단체가 투명하게 수익사업을 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구 차장입니다.

이성춘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겸 보훈선양국장입니다.

장정교 보상정책국장입니다.
 임성현 보훈예우국장입니다.
 황원채 복지증진국장입니다.
 김광우 제대군인국장입니다.
 전종호 보훈단체협력관입니다.
 김주용 국제협력관입니다.
 김대원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완익 사회적참사특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 장완익 안녕하십니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장완익입니다.

먼저 지난해 저희 위원회 2019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는 데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회는 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지원 대책을 점검하며 더 나은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작년 12월 11일 직권조사 개시 의결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이런 불행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위원회 직원 모두 절실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조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위원회 네 가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습니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원료물질 관리실태, 제조·판매 경위 등 관련 기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안전관리 적정성 조사는 물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및 피해자 찾기를 추진 중입니다.

둘째,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직접적인 선체 침몰 원인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하고 있으며, 구조·구난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대응 적정성도 조사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정보기관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와 증거자료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통해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무를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는 한편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피해 지원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합당하게 피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해 지원과 관련된 제도와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또 피해자와의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회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예용 부위원장입니다.

문호승 상임위원입니다.

양순필 상임위원입니다.

황전원 상임위원입니다.

오지원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경룡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욱 위원 위원장님, 다 읽지 말고 줄여서 합시다. 지금 이거 다 읽기 시작하면 언제 다 합니까? 간부 소개도 있고 한테.

○위원장 민병두 지금 업무보고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마지막입니다.

○정태욱 위원 마지막인데 너무 많으니까 좀 줄이도록 위원장님 세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민병두 예,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을 감안하셔서……

○정태욱 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있는 이야기를 뭘 자꾸 그렇게 다 읽습니까? 보면 알고, 대통령한테도 업무보고는 다 서면으로 했는데.

○위원장 민병두 그렇게 뭐 업무보고를…… 그 래도 이게 형식이지만 우리가 새해 첫 임시국회 에서 업무보고를 하는데 그냥 나와서 인사말씀만 하고 간부 소개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태욱 위원님의 걱정을 잘 감안하셔서 성경룡 이사장님, 간단하게 줄여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입니다.

주요 과제 다섯 가지 제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 발전 비전으로서 혁신적 포용국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연구회와 상대국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등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 문제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매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된 모든 연구 결과에 대해서 5월 달에 대국민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연구기관의 인력 유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 국정감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기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사이스(SAIS)와의 협력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앞으로 저희 연구회와 미국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할 때 다원화와 네트워킹 확대의 관점에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그 방향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기관장님들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후에 변하신 분만, 있다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없습니까? 그러면 기관장님들은 인사 소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석해 계신 양봉민 보훈복지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양봉민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367회 임시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의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에 6개 보훈병원 및 6개 보훈요양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의 핵심은 보훈의료전달체계의……

○위원장 민병두 원래 인사말씀만 하기로 했거든요. 업무현황 보고는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받고 아까 5개 기관만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독립기념관장, 88관광개발(주) 사장, 보훈복지공단 이사장 세 분은 새해 첫 임시국회니까 인사말씀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양봉민 예, 알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업무 내용은 참조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섭섭하시더라도 다음에 꼭 국회에 부탁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개별적으로 많은 대화

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기념관장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이준식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독립기념관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는 2019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정신 함양을 위해 독립기념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발전했습니다. 독립을 위해 희생과 공헌을 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드높이고 국민과 함께 그 가치를 지켜 나가는 것이 독립기념관의 맡은바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독립기념관 구성원 모두는 역사를 만나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여는 독립기념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독립운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동훈 88관광개발(주)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관광개발(주)사장 임동훈** 88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임동훈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민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88관광개발(주)는 전년도 순이익 목표인 105억 원에서 13억 원을 초과한 118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지난 12월에는 전국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선정한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으로 선정돼서 수도권 골프장 중 고객서비스와 코스 관리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국내 메이저 골프대회인 KEB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대회를 유치하는 등

골프장의 이미지와 브랜드가치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골프꿈나무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과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23개 출연연구기관의 업무현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업무현황에 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하실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 남구갑의 김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지난 1월 27일 날 본 위원이 보훈처에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한 자료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에서 심사한 광복 이후 행정 관련 사실조회 회보서,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는 국회가 보훈처의 업무 추진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의 자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 자료제출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2조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자료제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손혜원 의원 부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야당 위원의 요구에는 개인정보법, 정보공개법을 내세우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던 보훈처가 정부여당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 즉 5·18 계엄군 중 국가유공자가 된 17명의 심의의결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비공개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즉각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의 비공개자료라도 야당이 요구하면 거부하고 여당의 요구

에는 즉각 응하는 보훈처의 이 태도에 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당 간사님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훈처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고 노골적으로 야당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2월 1일 날 정무위원회의 김선동 위원, 김성원 위원, 김용태 위원, 김진태 위원, 성일중 위원, 주호영 위원, 정태욱 위원 등 8명 위원님의 서명을 받아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자료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위원장실에서 보훈처에 이 공문이 발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 발송을 막고 있지만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결과 외통위·기재위에서 국정감사·조사, 청문회 기간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전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당의 이런 행위는 무소속 의원 손혜원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즉각 8명 위원님이 연서해서 요구한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고 보훈처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존경하는 김종석 간사님께서 보훈처 자료요구에 관련해서 저희와 얘기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국정감사에 대비한 자료요구를 청구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 관련된 자료요구는 국정감사계획서가 통과된 이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게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고 그런 점에서의 자료요구라면 국정감사법에 맞춰서 자료요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훈처가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들어서, 제가 기억하기

로는 한 11개 정도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 외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 없는 자료는 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 부분들의 그 취지도 충분히 살리고 또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사항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보훈처에서 적극 자료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김성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성원 위원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입니다.

지금 유동수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제출 요구입니다.

손혜원 의원께서 민주당으로 있다가 지금 무소속으로 가 계시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소속으로 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드시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특히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료요구권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보훈처장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우리 국회가 다시 상임위 중심주의의 그런 국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에서부터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나 싶어 갖고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유동수 간사님께 긴급한 이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촉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 정태욱 위원님.

○정태욱 위원 지금 유동수 위원님께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손용우 옹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활동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보훈처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광복 후 남로당 활동설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심사하여 포상자로 의결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남로당 활동설의 근거가 뭐냐? 뭘 근거로 남로당 활동설이 있다고 너희들이 판단했느냐?’ ‘그 모든 행적을 심사해서 의결했다는데 그러면 남로당 활동설이 아니라는 건지, 기라는 건지 거기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나?’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데 아주 그냥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심

사위원회의 판단 근거, 남로당 활동설이 있다고 했는데 뭐를 근거로 활동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남로당 활동설을 고려해 가지고 의결했다는데 그러면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말인 건지 안 했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답변도 없고, 그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뭘 근거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아예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보훈처장이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생활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활동내용에서 설은 무엇이고, 긴지 아닌지, 그리고 왜 긴지 아닌지 판단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국가보훈처장님,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들께서 자료제출을 수차례 요구했고 아마 한 달 넘게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무슨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당 위원들의 이 지적에 대해서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개인정보법과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사유를 공개하고 대외적으로 기재를 하고 알리고 이런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기본적인 취지에 비추어서 본다고 한다면 자료제출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즉각적으로 야당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에 대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정훈 위원** 야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요구한 자료를 회부 안 하셨다 하니까 그것을 회부하셔야지요?

○**위원장 민병두** 잠깐 국가보훈처장 말씀하시고……

○**김정훈 위원** 아니, 그 서류를 보내고 요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민병두** 아니, 지금 김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동수 간사께서 국회법에 대한 해석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국정감사

획에 관한 것이 통과된 연후에 자료요청을 하면 그것을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 명의로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 국정감사계획이 채택되기 이전에 이것을 국정감사의 일환으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사실상은 1년 연중 국정감사가 되는 겁니다. 현재 현행 국회법은 연중 국정감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발언했던 것처럼 위원장의 이름으로 위원장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으로 지금 국회가 작위의무를 다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 자료를 미제출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개인정보에 관련된 게 있고 또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국가유공자를 심의하는 과정 그런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심사위원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두 가지 맥에서 저희들이 손해원 의원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정태옥 위원님이나 김종석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살펴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지상욱 위원님 말씀……

지금 국가보훈처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실 것만 있으면 확인하시고……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지상욱 위원님.

○**지상욱 위원** 저는 내용이 좀 다른 건데요, 보훈처의 국회에 대한 자료 협조가 아주 부실해서 한마디 안 드릴 수 없는데.

지난번에 보훈혁신위원회에서 31개 정책 항목에 대해서 권고안을 제출했고 그 권고안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달라고 하니까 없다고 했다가 그리고 제가 이행계획을 구하니까 그 이행계획은 아직 취합 중이기 때문에 없다고 또 그러고, 취합되면 준다고 했다가 그게 또 3월 말쯤 되면 백서가 만들어지면 준다고 했는데, 지금 그 계획 만들어졌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지상옥 위원** 그러면 처장님, 보훈처에서 저한테 답변 주신 것처럼 이행계획은 처음에 없었다는 것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없습니다.

○**지상옥 위원** 없다고 그랬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상옥 위원** 그러면 그 이행계획대로 기존에 시행된 것도 없다는 얘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없다’라는 것보다는 하고 있는 중이었지요.

○**지상옥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위원장 민병두** 자료요청 관련 의사진행발언만 하시고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신 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도 줄 수가 없었고……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상옥 위원** 그리고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 계획들은 쓸 수가 없었으니까 못 줬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제 현안질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사진행 신청하신 분이 김선동 위원님, 김용태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입니다. 손을 든 순서대로 김선동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그리고 김용태 위원님까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현안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저는 보훈처장님께서 자료를 즉각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참고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즉각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사생활의 침해라는 것도 보면 법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러니까 성명·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만 안 주시면 되는 겁니다.

보면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 누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거지요? 저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을 안 주신다는 그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법상에도 지금 성명·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만 제외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는 데 심사기준을 변경하지 않으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심사해서 했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 자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료를 자꾸 안 주겠다 이러시는 그 자체가, 저는 그런 발상 자체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행정을 하시는 것이 보훈처로서 합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어하고 그다음에 공개하지 않았던 그런 태도가 문제 있다는 것이고 정당한 행정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개하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회의록 내용이나 또 원 데이터 내용에 조사한 사람이나 또 증언이나 이러한 상당히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사생활 보호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생활 보호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사의 취지도 살릴 수 있도록 보훈처장님께서 자료를 잘, 사생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잘해서 제출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김용태 위원님.

○**김용태 위원**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하고 유동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국정감사계획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연중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제출 요구는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 그래서 정부가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안 자체, 보훈처의 일반적인 업무,

특히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선정 경위·과정 이게 국가보훈처의 일반적인 업무 아닌가요? 이런 것을 국정감사하는 게 우리 국회 정무위원회 임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국정감사계획서에 안 들어 있고, 들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제출 안 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논거에 의해서 우리가 8명이 요구한 자료요청을 보훈처에 송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되고요.

두 번째, 보훈처장, 뭐가 두려워서 이 자료 공개를 못 해요? 유동수 위원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심사위원회의 어떤 심사위원이 찬성했고 어떤 심사위원이 반대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김용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일곱 번이나 떨어졌던 사람인데 안에서 어떠한 토론이 있어 가지고 일곱 번이나 떨어진 사람을 붙였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아니에요?

이것 실명들 빼고 주세요. 심사위원 중에 전체 다수, 10명 중에 9명이 찬성했고 1명만 반대했다든지 그런 게 자료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것 국민들이 ‘이상하다. 일곱 번씩이나 떨어진 사람을 왜 했느냐?’…… 오히려 거꾸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본인들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부당하게 의혹 제기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걸 밝혀야지 뭐가 두렵다고 그걸 안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에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태 위원** 처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공격당하도록 놔두냐고요, 처장이?

○**위원장 민병두** 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하여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이게 보면 나중에 또 시비가 일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미리 한번 조언을 드립니다. 김종석 간사님이나 유의동 간사님이나 유동수 간사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하나는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또 하나는 심사위원들이 다음에 심사를 할 때에 있어서

의 독립성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원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과거에 정무위원장을 하셨던 김정훈 위원장님이나 김용태 위원장님도 잘 아실 텐데 과거에 안장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속기록을, 안장심사위원회에서 누가 찬성했다 반대했다를 일일이 공개하지 않은 예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그 문제 가지고 시비가 안 생기게 간사님들께서 중간중간에 협의를 하셔서 가지고 국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해석에 관해서는 계속 이견이 있는데 이것은 간사님들 간에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요.

현안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구갑의 자유한국당 김정훈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입니다.

국무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산에 오셔서 가지고 ‘영남 5개 광역단체 합의를 우선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총리실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있지만,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이라는 게 김해신공항 건립사업을 말씀하신 겁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만약에 지금 기준에 있는 김해신공항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입지가 다른 쪽으로 된다면 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런 과정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그 사업이라는 게 김해신공항 사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나 이거예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김정훈 위원** 그러면 총리실에서 영남 5개 광역단체가 합의가 안 돼서 검토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네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지금 아시는 대로 부울경 지역에서 검증 중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토

부하고 의견 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견이 다행히 영남권 다섯 단체장들이 합의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안 될 때는 총리실로 넘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는 뜻이다라고 지금 실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총리실에서는 검토하더라도 검토기간 중에도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부 부울경의 가덕도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지금은 그것 자체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총리실에서 검토를 하더라도 김해신공항 사업은 계속돼야 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그렇습니다. 현재로서의 정부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검토가 된다 할 때 그 검토 방식이나 기간 등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아직은 총리실에 조정이 공식적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그런데 13일 날 그때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총리실 검증과 관련해서 총리실에 관련 기구를 만들겠다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 버렸어요.

그리고 2015년부터 국무조정실 내 갈등관리팀에서 동남권 신공항, 김해신공항 문제를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2019년까지 5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갈등관리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기구도 안 만들고 지금 있는 데서도 성과도 없고 이렇다 하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오거돈 부산시장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씀 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총리실에서 검토를 해도 계속 김해신공항은 건립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별도 기구도 만들지 마라, 지금 있는 갈등관리팀도 역할하는 것도 없다, 그런데 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

냥……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저희가 관리하는 갈등과제가……

○**김정훈 위원** 정치적 체스처를 취한 것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갈등과제별로 별도의 논의기구나 이런 게 있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논의하는 기구 논의체는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5년째 이 김해신공항 문제를 갈등관리팀에서 집중 갈등관리로 해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오는 걸 대통령께서 총리실에 검토시키겠다 하는 게 정치적 체스처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거돈 부산시장 입장을 고려한.

답이 없으면……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정훈 위원** 긍정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이낙연 총리가 중국 가서 가지고 리커창 총리와 면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때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 안건이 들어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아마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중국이 2, 3년 안에 동부지역 해안가에다가 석탄화력발전소 460여 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만들어지면 안 그래도 지금 한국에 중국 미세먼지 때문에 비명소리 나오는데 약 소리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총리께서 어떻게 말씀하실 예정이십니까? 알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문제고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각자의 저감조치에 필요한 내용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서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협력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훈 위원** 중국은 중국이라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주범이 석탄화력발전소다, 경유차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없어요. 석탄화력발전소 집진시설 1기 하는 데 3000억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그것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경유차 대책 없습니다. 그런 걸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아니요, 발전원별 감축 대책은 굉장히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석탄발전소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4개는 이미 폐쇄가 됐고 추가로 조기폐쇄 검토하는 게 4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농도가 되면 전 석탄발전소 60개에 대해서 상한계약도 실시하고 있고……

○**김정훈 위원** 경유차.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경유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국민의 행태나 이런 것들이 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 타고 하는 계획은 지금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보훈처장님, 제 생각은 보훈정책은 한 나라의 정통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역보다도 원칙과 기준이 분명하고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이 무너지면 저는 국가의 기본이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장관이, 주무기관장이 보훈대상 선정 관련해서 이해당사자의 민원을 직접 들으러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부분은 이해당사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태규 위원** 손혜원 의원 만났을 때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뭘 요구하던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국가유공자로……

○**이태규 위원** 애로사항을 이야기했겠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애로사항은 아니고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뭐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듣고 제가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니 다시 신청을 해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

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완화해야 된다는 부분을 손혜원 의원한테 얘기했던 그 시점에 그때 어떤 다른 신청자, 탈락자들한테도 그러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부분을 알려줬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전체적으로 다 알려 주지는 않았습시다. 그러나……

○**이태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줬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공정한 행정입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점 기회라는 건……

○**이태규 위원** 그다음에 추후로 그 이후에 보훈예우국장은 왜 두 번씩이나 더 추가로 손혜원 의원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까? 보고한 이유가 뭘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동안에 안 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요구해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당사자한테 주무국장이 가서 심사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고 정책집행이나……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심사 진행사항을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이태규 위원** 아니, 언론에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심사 진행사항을 보고드린 게 아니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그 심사가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러 갔었고요.

○**이태규 위원** 그건 다 아는 얘기고 2월 달에 처장님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만났을 때 이미 얘기가 다 됐을 텐데……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다 된다는 게 무슨 의미……

○**이태규 위원** 5월, 7월에 계속해서 갔을 적에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이 위원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십니까?

○**이태규 위원** 뭐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제가 2월 달에 손혜원 의원을 만나러……

○**이태규 위원** 아니, 2월 달에 심사기준을 완화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랬습니다.

○이태규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태규 위원 특정인한테 정보 독점이나 선점의 기회를 줬는데 그것이 공정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그게 공정합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점의 기회를 준 건 아니……
 ○이태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선점이라고……
 ○이태규 위원 다른 유공 신청자들한테 왜 이런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았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이 위원님, 그것은 다 공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와서 독립유공자의 현황을 보니까 독립유공자로 추정을, 그러니까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추정 인원이 300만이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이태규 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고……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2월 달에 손혜원 의원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5월, 7월에 담당 주무국장이 또 가서 보고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건 과정을 설명드리러 왔었습니다.
 ○이태규 위원 이해당사자한테, 민원인한테 그 과정을 주무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훈처의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전례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태규 위원 이런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이번에 그 기준을 완화하면서……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런 전례가 있었느냐만 답변하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적극 발굴이라고 하는……
 ○이태규 위원 아니, 발굴도 좋은데 이런 사례

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이게 손혜원 의원한테 주는 독특한 유례없는 사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이태규 위원 다른 사례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장관이 직접 만나고 거기 주무국장이 가서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보고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장관님이 직접 가시고 주무국장이 직접 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문의가 오면?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장관이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이태규 위원 그러면 주무국장이 직접 갔습니까, 문의가 오면?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주무국장이 갈 수도 있고 사무관이 갈 수도 있고 설명을……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지금 대시라 이거예요,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 문의가 오면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주무국장이 언제 어떤 사례에서 손혜원 의원하고 동일한 처우와 예우를 해서 가서 보고했다 그 전례를 대세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태규 위원 예?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드리겠습니다, 찾아서.
 ○이태규 위원 오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정보의 독점이나 선점 기회를 주는 것은 불공정한 행정이고요.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특혜 행정입니다. 이것이 여당 의원이고 영부인 친구니까 이런 대우가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한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이태규 위원 그러니까 본인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 보훈처에 대한……
 ○이태규 위원 정부정책 발표 이전에……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업무의 근간을……
 ○이태규 위원 제 얘기를 좀 들으세요!
 ○성일종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게 물고 가시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민병두 이태규 위원님, 일단 1분 더 드려요? 어떻게 해요?

○이태규 위원 위원장님, 저 질문 이따 오후에 다시 하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이 주의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민병두 제가 주의를 주기 전에 우선 1분 더 쓰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쓰시겠어요?

○이태규 위원 예,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여러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손을 드셨는데 일단은 당사자를 대신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유의동간사님께서 우선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유의동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훈처장이 보여 주는 그 태도는 제가 국회의원 된 경력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보훈처장이 저희 위원들한테 질문하고 대답을 구하는 자리인지 저희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구하는 자리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태도에 대한 지적과 다시는 이런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제가 지금 주의를 촉구해도 또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더 듣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김성원 위원 예.

○위원장 민병두 그러면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이 자리는 국민이 묻는 자리거든요.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묻는 자리입니다.

보훈처장님, 자리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자고 오신 겁니까, 지금? 어떤 거든 다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서류로 내시든 답이 끝나고 하셔야지, 지금 그 자리가 국회의원인 줄 아십니까?

○위원장 민병두 성일종 위원님……

○성일종 위원 굉장히 잘못된 방향에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국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오늘 국가보훈처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독립운동가를 가능한 한 최대한 발굴하고 또 그 한편에서는 선정 경위에 있어서 의문이 없도록 철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도 선정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다 짚어 보자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의혹이 소명되면 국가보훈처가 하는 업무의 정당성과 지금까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의 권위가 더 빛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도 과정을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가보훈처장께서는 이게 지나간 이슈지만 여전히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셔서, 아마 한두 분 말씀에 5분 내 짧은 시간에 답변하다 보면 답변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격앙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적 의혹과 국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들을 충분히 취지를 듣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김종석 위원 지금 처장께서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시는데요. 위원장님, 이것은 방금 보여 준 처장의 그런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셔야 됩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훈처장께서 언성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딱히 이 부분 때문에 사과를 하라고 짚어서 제가 지적하기에 아직 조금 짝 짝 짚어지지 않아 가지고, 만약에 김종석 위원님이 ‘이런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의 발언이 정말 심각하게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짚어 주시면 제가 그걸 가지고 사과를 촉구하겠는데 그게 좀 제가 적절히 잡히지가 않습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면 잡아드릴까요?

○**유동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님, 한 분이라도 더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겠다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태규 위원님 말씀하신 발언 중에 중간에 끼어들면서 계속 발언을 막는 행위는 보고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장 민병두** 그런 점에서는 보훈처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동수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게끔 끊고 어떻게 보면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대하는 듯한 바로 이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우리 위원회와 또 국회의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해서 침해하고 또 존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처장께서 유감을 표명하시고 앞으로 답변하시는 데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사과를 하라니까 뭐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민병두** 보훈처장님, 하여간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훈처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뭔지도 알아요. 아까 ‘영부인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바로 격앙되어 갖고 나오시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냥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질의를 끊고 들어오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의동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보훈처장 대변인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것 따끔하게 혼을 내셔야지!

○**위원장 민병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보훈처장이 그러니까 ‘본인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의 질의를 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정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이것은 수용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제가 끼어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다 듣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대구 북구갑의 정태옥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태옥 위원** 국가보훈처장님, 지금 팩트를 구체적으로 다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2018년 4월 2일 날 그러니까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바꿔 가지고 고 손용우 옹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18년 4월 2일이 아니군요.

○**정태옥 위원**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두 달 전인 2월 6일 날 만났어요. 일반인들은 이 지침이 객관적으로 나오기 두 달이나 전에 도저히 알지도 못할 때에 미리 알려 주고, 그리고 실제로 전화로 유공자를 신청했다는 것이 2018년 2월 8일입니다. 전화로 신청하고 사전에 알려 주고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이 특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혜를 떠나 가지고 압력을 넣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7년 9월 19일 날 보훈처가 총리실에 업무보고한 자료를, 그 보도자료 낸 대로 보면 ‘독립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 그 대상에는 의병과 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자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회주의자가 들어갔느냐? 이것은 손혜원 의원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것을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의심을 하느냐를 구체적으로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왼쪽에 있는 것이 잘 안 보이겠지만, 일반인들이 거의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것인데 2015년 8월 15일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일반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약산 김원봉 선생이 북한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할 때에 검열성상, 노동상 그리고 또 노동당 중앙위원 하신 것은 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

○정태욱 위원 그 객관적인 경력은 아시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정태욱 위원 그분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서훈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하겠다는 뜻이네요? 수렴해 가지고 잘하면 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가정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태욱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보훈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는 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발언인 거예요,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게. 그렇지요?

지금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의견을 수렴한다니까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약산 김원봉 선생이 북한 노동당을,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데에 노동상을 했고 검열성상을 했고 그다음에 노동당 중앙위원까지 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정태욱 위원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태욱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 하나 또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되지 않고요.

○정태욱 위원 잠깐만, 제 말을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그러면 독립운동 할 때의 공이 크다…… 약산 김원봉 선생이 굉장히 공이 큰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인 공헌한 사람도 만약에 보훈대상자로 되면, 만약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김일성도 독립운동 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보천보전투라고 해 가

지고 국경으로부터 20km나 국내 진공을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때. 그러면 그 사람도 당연히 훈장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 훈장을 주면 그 손자인 김정은부터 우리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훈연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북한 정부 수립에 굉장히 공헌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예전에 독립운동의 역할이 있었으면 김일성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것 하나하고요.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을 보면 ‘북한에서 숙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유공자 훈장을 드려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렇다고 하면 또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서 6·25 전쟁에……

1분만 더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민병두 예, 1분……

○정태욱 위원 그러면 이 논리대로 김일성이 해방 이전에 큰 공을 세웠으면 해방 이후에 어떤 일을 해도 좋다고 하면 김일성을 해야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나온 것처럼 만약에 숙청이 되었기 때문에 했다 하면, 박헌영은 숙청되었어요. 그러면 박헌영도 굉장히 공산 활동을 많이 했다면 훈포장을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보훈처가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답변드릴까요?

○정태욱 위원 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진단해서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헌하고 기리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합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주시는 내용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보훈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호국과 민주를 아울러서 역사적인 어떤 것을 포괄적으로 그 시대에 공헌이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예우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보훈은 절대적인 개념이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훈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길목에서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화와 번영은 결국은 그 시대에 어떤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기려 가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그 이후의 공적으로 북한 정권에……

○위원장 민병두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기여했다고 해서 검토를 하지 말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는 북한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물론 6·25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략도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따가 또 질의가 나오면 답변하시기 바라구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거기까지 하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 보훈처장님, 보훈처장님!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고용진 위원 조금 냉정을 찾으시고요, 차분하게 답변하시고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생각들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냉전시대가 끝나고 남북 간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여러 가지 우위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편협되게 모든 우리의 역사를, 특히 독립의 유공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병두 위원장, 유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에 아직도 그러한 대립각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잘 살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잘 몰랐고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추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마는 한 가지만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하고 7월에 해당 국장이 손혜원 의원에게 심사 진행 경과를 보고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십

시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하지 않았…… 그러니까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고용진 위원 해당 국장이 무엇을, 두 차례에 가서 어떤 내용을 어떤 식의 보고 했는지만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고 해서요 그 과정을 설명을 하러 갔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과정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안 된 과정, 여섯 차례의 심사를 했는데 안 된……

5월에 방문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차례 심사에 보류된 내용을 설명하러 간 것이고 7월에 방문한 것은 포상대상자로 확정이 됐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러 갔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7월에는 포상대상자로 확정된 것을 보고하러 가셨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고용진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필요하면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답변 듣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확정이 된 후에 친수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러 갔었습니다.

○고용진 위원 노형욱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고용진 위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과 함께 적시한 사항은 법령의 규정과 달리 청와대와 관련 부처가 임원추천위 단계에서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되는 관행은 오래도록 지속되어 왔다는 취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의성과 위법성을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취지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 법령에는 공모제로 되어 있고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임원과 장들은 사실상 그런 어떤 관행이 해당 장관이 인사 수요를 파악하고 청와대와 협의하는 것이지요. 장관이 인사 수요를 파악해서, 사직 의사 등을 파악해서 보고를 받는 것이 위법한 것입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산하기관에 대해서 수요

를 파악하는 것까지는 직무의 범위에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인사 하는 것은 인사 권한이 있는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고용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직권남용이 여기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적용이?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영장담당 판사가 오늘 기각을 하면서 낸 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이 얘기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 야당에서도 이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문제 삼고 있는데 그동안 관례를 따져 보면 어떤 정부, 어떤 장관도 아마 다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 제기를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의 인사는 엄청난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출직 아니면 논공행상을 해서는 안 된다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새롭게 정권이 창출된 이후에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오래된 관행이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에 대한 이 부분이 좀 더 제도화되고 이런 것으로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런 것을 위해서 연구하거나 노력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그 부분을 국조실이 논의할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말씀을 주신 그 사항을 함께 내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저는 국조실에서 국회와 정부가 어떻게 하면 공공기관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행정연구원이나 전문가들에게 한번 의견을 물어서 이런 일이 계속 소모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청와대 인사파트와도 상의하시고 해서 나름의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미세먼지 관

련해서 폐차지원금 지원하고 있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고용진 위원** 지금 지원금이 어느 정도 소진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집행 실태는 제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진 위원** 점검 안 하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 위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폐차 신청을 하고 자기 주차장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개월 넘도록 세워 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곧 추경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좀 늘리고 지자체와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유동수**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 국무조정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의 연구원장들이 무더기로 교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증언을 종합해 보면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층에서 조직적인 개입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1면에 주요 기사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통일연구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에 관한 기사였는데 조선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의 일부 내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손기웅 원장이 ‘12월 말에 3대 기관장 나갈 때 내 이름이 청와대에서 나왔다고……’, 그런데 당시 경사연 사무총장이던 강은봉 총장은 ‘저도 좀 의아했는데 지나갔으니까, 다른 분들은 11월 초에 나왔어요’, 손 원장은 ‘그런데 BH라는 게 청와대예요, 국가안보실이에요? 어디입니까?’, 강은봉 총장 왈 ‘저희는 인사수석

실에서만 통보받거든요. 다른 루트는 모르겠습니다’, 손 원장 ‘그때는 분명히 제 이름이 12월 달에 나왔습니까?’, 강은봉 총장 ‘그전에는 일괄로 왔었는데 손 원장 이름은 없었거든요’,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사퇴 압력을 받으니까 두 사람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청와대 인사수석실로부터 경사연 산하 연구원장 교체를 위한 블랙리스트 존재가 확인된 것 아닙니까? 국무조정실장, 어떻게 보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글썬요, 국조실에서는 그런 얘기는 금시초문입니다. 블랙리스트가 있다가거나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출연연구기관 기관장님들의 교체를 인위적으로 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아니, 지금 이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경사연 사무총장이 ‘BH에서 일괄로 왔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당시 국무조정실 차장 아니셨어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김종석 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셨다고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잘 아시겠지만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의 임면 권한은 연구회 이사장님한테 있는 것이고요.

○**김종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성경룡 이사장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그 당시 강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제가 취임한 날짜가 2018년 2월 12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도된 내용은 다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종석 위원** 그러나 강은봉 사무총장은 2018년 7월까지, 그래서 이사장과 5개월간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런 중대사항을 보고받지 못하셨단 말씀입니까? 강 총장이 이사장 밑에서 5개월간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성경룡** 지금 이사안은 제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직접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종석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환경부 김은경 전 장관이 표적감사라는 것 때문에 소위 찍어 내기를 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계속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손기웅 원장이 ‘지난번 사무총장님 말씀처럼 BH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잡혀 나갈 것 같으면 명예롭게 나가고 또 연구원은 내가 평생직장인데 연구원 명예도 생각해서 용퇴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생각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11월 달에 왜 총리실 감사 왔을 때 그때 다 좋았잖아요. 그때 나갈걸’, 그때 11월 총리실 감사 나왔을 때 사퇴 안 한 것을 후회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국조실장님, 2017년 11월 달에 국무조정실에서 산하 연구기관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산하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요. 여기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는 17년 당시에 원장님에 대해서 성희롱 관련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 대책에 따르면……

○**김종석 위원** 그런데 오비이락이지요. 그다음 표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무더기로 10여 개의 연구기관에 대해서 소위 인사채용 특정감사가 나갑니다. 이것은 2017년도 연초에 발표한 국무조정실 연간 감사계획에 없는 감사를 무더기로 국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표에서 보시다시피 빠르면 김준영 당시 이사장은 감사 시작한 지 9일 만에 사퇴하고 행정연구원장은 닷달 정도 버티다가 사퇴하고 평균 1~2개월 동안에 다 원장들이 두 손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바로 표적감사가 아닌가.

특히 표적감사로 여겨지는 대목은 과기연, 환경연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아서 임기를 마친 국토연 원장, 법제연구원장들은 이 당시에 특정감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감사를 안 받아서 그냥 임기를 마쳤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를 무더기로 받은 10여 개의 연구원장들은 다 한두 달 내에 사표 내고 나갔습니다. 이런 것을 표적감사라고 안 하면 뭘 표적감사라고 하겠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저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제돼서 강원랜드 등 해서 그때 당시에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일환이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통일연구원의 케이스는 진정에 의해서 실제 조사를 나갔고 그 당사자하고 주변

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취합해 보고, 서로 생각은 달랐습니다만 사실 팩트는 맞는 것 같다 해서 그걸 이사회에 통보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사회 회의가 있기 전에 사전에 사퇴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석 위원** 오후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동수**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북구강서구갑 전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위원** 보훈처장님, 베트남전쟁 중에 우리 교민들하고 베트남 난민 1900여 명을 구출했던 십자성 작전 알고 계시잖아요. 베트남판 흥남철수라고 불리는 작전인데요. 그런데 이 작전에 투입됐던 269분 이분들이 지금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국방부와 보훈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방부가 십자성 작전을 참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의 검토 보고 자료가 이렇다’ 이러면서 지금 참전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전쟁기간으로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재수 위원** 그러면 몇 년도 몇 월까지 전쟁기간으로 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제법상의 전쟁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재수 위원** 국제법상 전쟁기간이라 함은 1973년 1월 달에 체결된 파리협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위원** 이게 국제법상의 참전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인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제법상 참전기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미국은 제가……

(유동수 간사, 민병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재수 위원** 미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된 게 1973년이고요. 그런데 이 파리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국 같은 경우는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1975년 5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파리 평화협정은 73년도에 체결이 됐는데 체결 당사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1975년 5월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1973년 1월까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전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국방부 주장이 체결 당사자인 미국도 1975년 5월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1973년 3월로 주장을 해서…… 지금 이 십자성 작전이 197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행된 작전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쟁기간을 미국과 똑같이 5월까지로 하면 이 십자성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은 참전유공자 자격이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기간으로 인정이 되면.

○**전재수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미국이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1975년 5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1975년 5월로 안 합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게 아마 국방부에서 기간을 정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유사한 걸프전이라든가 리비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쟁기간을 산정함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위원** 처장님, 파리 평화협정이 체결된 게 1973년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했던 미국도 베트남전쟁 참전기간을 1975년 5월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경우로 호주 같은 경우도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군을 다 철수시켰어요. 그런데 참전기간을 1975년 4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1973년 3월로 해서, 지금 이 십자성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참전유공자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협의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예, 한번 좀 보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뭐냐 하면 국방부가 십자성 작전을 하는데 적과의 직접적 교전, 전투행위가 없어서 참전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교전이라든지 전투행위가 없어서 참전유공자가 안 된다 이 이야기거든요, 국방부는.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 보면 가수 고 백설희 선생님, 고 금사향 선생님, 고 신세영 선생님, 이분들은 전선을 돌면서 말하자면 공연을 해 주셨던 분들인데 6·25 참전유공자입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인 전투행위를 하신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공자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 십자성 작전에 대해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훈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협의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 꼭 좀 협의를 해 주십시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경기 군포시울의 이학영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학영 위원 경기 군포시의 이학영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께 보훈단체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엇그저께 언론에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한 사건들이 많았음이 노출되었는데 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고엽제전우회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 결과를 보면 참 참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보훈처의 감사 결과를 보면 장부 결산 불일치, 회계 증빙자료 부실, 사업소장 개인 명의 사업자금 관리, 규정 무시와 업무태만에서 비롯된 손실 등 수익사업의 난맥상이 날날이 드러났습니다,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런데 보훈처에서 개선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지도감독에는 지금 제대로 순응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리고 고엽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법적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정부가 시정 및 개혁 요구를 하는데도 반발하고 최근에는 보훈처장 해임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고엽제는 아니고…… 예, 상군하고 3개 단체입니다.

○이학영 위원 이제 해임요구를 받을 일입니까? 잘못된 것을 지금 제대로 고치자고 하고 있는 거

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보훈처는 단체 회계 사항에 대한 감독권과 단체 운영에 대해 보고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이를 거부할 시에는 수익사업 취소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학영 위원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은 없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학영 위원 매년 국민의 혈세를 수백억씩 지원받고 있는 보훈단체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수익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안 됩니다.

○이학영 위원 강력한 처방 등 또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강력히 처방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현행법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회원 복지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특정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급여, 상여금 지급 이런 데 쓰였고 또 수익금 사용을 아무 계획 없이 적립하고 있어서 취지와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 지역에 내려가 보면 보훈단체 회원들의 불만이 극도로 높습니다. ‘우리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청와대에 보훈단체 비리척결, 적폐청산의 개선방안 청원이 등장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수익사업의 취지는 사업을 통한 회원 복지라고 할 때 따라서 불법 운영, 관리능력의 부족, 비리 등으로 얼룩진 수익사업의 실태를 바로잡아 수익이 회원 모두에게 고루 전달되어야 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학영 위원 저는 그래서 차제에 보훈단체가 각자 운영하던 수익사업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가가 지정하는 주체가 종합 관리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사업 체제로 전환시켜서 그 수

익을 당당하게 보훈단체 전 회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시켜야 보훈단체 명예도 살릴 수 있고 본래의 수익사업을 하게 한 취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전체적인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돌리기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고 오후에 더 보충하겠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들이 진짜 특수한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자신들이 현역일 때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상해 이런 여러 가지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이지요? 어려운 것이지요, 다른 단체 회원들과 다르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이학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도 저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불리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학영 위원 오후에 재질의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단체 간의 또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특수임무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예.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광주 동구남구갑의 장병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장병완 위원 국무조정실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정부가 총사업비의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사상 최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했어 요. 주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건전재정 관리수단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것을 예타 평가

기준을 바꿔서 추진했었던 것이 옳았다고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난 10여 년간 수행된 예타 결과를 회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평가기준에서 결국 경제성 항목이 압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발전과 정책성 항목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타 면제 발표할 때 대통령도 앞으로 예타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이 예타 기준이 지금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해 가지고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혹시 말이지요, 아주 불안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 예타 면제 사업들이 다음 정부에서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평가기준을 개선해서……

그중에서 사실 저희들이 볼 때 타당성이 아주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업들은 예타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개선을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그것 좀 더 구체화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예타 면제한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사업을 위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사업비가 한 24조 정도로 나오는데 그중에 연간 국비 부담을 따지면 2조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470조~480조 되는 정부 재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다음으로 지금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이 대회가 성공하는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심이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아직 분위기가 냉랭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 선수단이나 응원단 그리고…… 이런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텐데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에 그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요. 작년 11월,

12월에 있었던 남북체육회담에서 두 차례 그다음에 금년 2월 달에 로잔에서 있었던 남북과 IOC의 3자 회의 여기에서도 우리가 광주 수영선수권대회에 선수단과 응원단, 예술단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장병완 위원 아무래도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입장권, 관람권 판매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다음에 후원사들도 예전 다른 국제대회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따라서 문체부나 행안부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이 선수권대회의 불 조성과 마케팅 문제 그다음에 무비자 입국 문제랄지 대회 기간 중 KTX 임시편성 또 한시적인 시내면세점 설치 등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주관이 되어서 정부의 역량을 좀 모아야 하지 않겠어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그래서 지난달에 총리가 주재하셔서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광주 지역과 준비위원회의 요청이 있었고 그런 것을 관련 부처하고 지금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지금 현재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조는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보훈처장님, 지금 서대문에 있는 순국선열 현충사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럼요.

○장병완 위원 그것 어떻던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굉장히 열악합니다.

○장병완 위원 그렇지요? 지금 3·1 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데……

위원장님, 제가 오후의 질의는 서면으로 할 테니까 한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위원장 민병두 1분은 다 쓰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 그러면 2분……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국가 관리 기념관이 다섯 군데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그런데 지금 순국선열 현충사는 독립유공자 등에서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고 기리는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훈 체계가…… 사실 당시 독립운동을 해서 일찍, 예를 들어서 사형이 되셨다거나, 치열하게 어떤 운동을 하셨던 분일수록 사실은 먼저 가셨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셨지요.

○장병완 위원 그런데 살아남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보훈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돌아가신 분들, 광복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한 35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 모실 위패가, 그중에서 지금 모시는 게 2835개면 이를테면 위패만도 모실 공간이 없어서 한 700개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패 자체도 지금 못 모시고 있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가 보셨으면, 거기가 좁아 가지고 무슨 기념행사 한 대여섯 명 겨우 이렇게…… 참배할 공간이 부족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지금 서울시 절반, 서대문구청 절반으로 해 가지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이렇게 여기에서 손을 떼고 있다는 것 자체는 보훈의 어떤 기본 정신에도 안 맞고, 이것은 지자체에 맡겨 놓을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보훈처는 현충시설관리법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에 예산 지원의 근거를 넣어 가지고 그때부터 지원하겠다는데, 여기서는 예산 지원 문제가 아니라 먼저 돌아가시고 가장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모시는 게 의무이지 그것을 구청에다가 맡겨 놓고 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현충시설관리법 통과 이전이라도 서대문구하고 협의를 하고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현충사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을 중앙정부로 관리를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그 자리가 현재는 지금 문화재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다가 그것을 재건할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해야 하고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순국선열 그 기념사업회에서 원하지 않고 있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완 위원 아니요, 저도 만나 봤는데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고 하면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지금 솔직히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오

면 모시고 가야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얼굴이 우리가 부끄러워서 외국손님들 모시고 갈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개선방안을 어떻게 하실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강원 춘천시의 김진태 위원 질의 순서입니다.

○김진태 위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보훈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첩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태 위원 지금은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될 수도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현재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간첩은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김일성에게도 훈장을 주겠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일성도 그러면 독립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은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없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금의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더 확대하려는 무슨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대상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기준을 바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간첩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더 할 계획이 있느냐는 것……

○김진태 위원 간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없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진태 위원 그러면 김일성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닙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진태 위원 그것을 왜 분명하게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어물어물 넘어갑니까, 여태까지?

그러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옹에 대해서 지금 간첩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혐의일 뿐이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어떻게 확인을 했어요?

그 자료를 지금 안 줘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의 그 사실조회 회보 거기에 의하면 이 손용우 옹이 47년에 입북을 했고 48년에는 남파되어 지하공작을 했다고 그러고 6·25 당시에는 북한의 중앙정치국과 접선해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사실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김진태 위원 아니, 가평경찰서장 사실조회 회보, 성북경찰서장 사실조회 회보 89년, 90년 자료에 지금 제가 얘기한 그대로 적혀 있는 사실이 있느냐고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진태 위원 그것은 맞지요?

경찰 측 자료에 의하면, 결국은 입북했지 거기서 남파되어서 지하공작했지 6·25 때는 북한 중앙당하고 접선했지 이런 자료가 경찰 측 자료에 의하면 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됩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자료의 신빙성도 저희들이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겁니다.

○김진태 위원 경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경찰 자료는 믿기 어렵고 누구의 말은 믿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데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태 위원 잘 모른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심사의 과정이라든가……

○김진태 위원 여태까지 이분에 대해서 여섯 번이나 인정되지 않은 이유가 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료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자료가 아니라 증언……

○김진태 위원 이렇게 하지 않기로 했지요? 중간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하십시오.

○김진태 위원 그래서 여섯 번이나 이렇게 인정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손혜원 의원을 만나고 나서 다시 심사를 하니깐…… 새로 무슨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까, 서류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서류로 자료를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없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진태 위원 경찰로부터 새로 자료 받은 것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없습니다.

○김진태 위원 없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경찰의 내용은 기록이 아니라 증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증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진태 위원 하여튼 간에 증언이고 뭐고 사실 조회 회보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도 없고 새로 말 들은 것도 없는데……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김진태 위원 이것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있지요? 입북하고 남파돼서 지하활동 하고 북중앙정치국하고 접선하고, 이 세 가지가 사실이라고 하면 이것은 간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는 걸로 판단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아니, 사실이라고 하면?

그래서 경찰 자료에 의해서 그런 사실이 다 인정되는데 갑자기 다시 검토를 하니깐 이제는 신빙성이 없어서 그것 무시하고 그냥 준 거다, 유공자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진태 위원 아니, 제가 물을 때는 뭐하고 있다가……

아무런 자료 없이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전에는 여섯 번이나 경찰이 그렇게 의견을 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줬는데 다시 보니까 그냥 해 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지 않고요. 광복 후에 청년단체 가입해서 활동했다는 증언이 있어 가지고 포상을 보류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18년 4월 포상기준 완화에 의해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김진태 위원 그 정도 합시다. 그 정도 하고요.

정권 수립에 기여를 하건 뭐건 이것은 간첩혐의자란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으로부터 파괴하려 온 간첩혐의자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보훈처장으로서 자격이 없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께 위원장님께서 전달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답변하실 때 조금 명확하게하시고, 오후 질의 떠나.

보훈처장님, 지금 이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크게 나아가서는 검찰 조사까지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답변 자료가 보훈처장님한테 되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서부터 계속 답변을 보고 있으면 답변이 좀 오락가락합니다. 좀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보훈처장님,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어디까지를 갖다가 인정하시는 건지, 어디까지를 아니라고 하시는 건지 사실관계가 좀 불투명한 경우가 있고요. 또 방향이나 정책 철학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용우 옹의 독립유공자 지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좀

정확한 답변을 우선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기본적인 방향이나 철학에 있어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가 5분이 지나고 나면 답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더 명료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서 우리가 사실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바라고.

아울러 지금 이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추혜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짧게 좀 할게요.

○위원장 민병두 추혜선 위원님.

○추혜선 위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처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질의를 할 때도 최대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발언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들으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의 추궁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측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발언들은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극복해야 될 아픈 역사의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인식을 좀 해 주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추혜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또 국가보훈처장이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지정한 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방어권을, 정당한 공적 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국가보훈처장이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대신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료한 답변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은 이어서 서울 중구성동구울의 지상욱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지상욱 위원 저는 오늘 보훈처장의 답변에서 상당히 실망을 넘어 충격을 금치 못합니다.

보훈처장님, 지난번에 약산 김원봉 선생님 그분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한 바 없다'라고 보훈처에서 공식 답변 주셨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검토한 바……

○지상욱 위원 여기 보세요. 보시고 얘기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한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것 모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압니다.

○지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한 바 없다면서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3·1절 독립유공자 서훈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3·1절이 아니라 다른 날은 하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서훈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독립유공자로 그분을 심사할 때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북한 정권에 기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안 된다고 되어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그러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정태욱 위원님 답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훈의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아까 뭐라고 했는지 정신이 없어서 기억 잘 안 나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아니에요, 기억이 나는데요. 기준을 바꿔서 할 수는 있다……

○지상욱 위원 기준을 바꾸시겠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고……

○지상욱 위원 아까 그 답변 때 많이 흐트러졌는데요. 제가 보훈처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사항 그것은 그냥 단순히 권고사항이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행계획 없다고 그랬는데 이행계획이 있었고 그대로 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직 취합이 안 됐고 결재가 안 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보훈처장님은 기준을 바꿔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훈혁신위원회에 참석했던 오창석 위원이 이랬어요. 3·1절은 우리가 권고하는 게 너무 급박해서 못 했고, 이미 다 정해졌고 8·15도 있고 순국선열의 날도 있으니까 기준을 다시 정하고 독립유공자로 모실지 정리해 보자는 게 보훈처의 입장이래요. 보훈혁신 위원이 보훈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참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약산 김원봉 선생의 항일투쟁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6·25 동란을 겪고 남북이 대치돼서 6·25에 참전해서 그렇게 희생자가 많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나중에 남북이 하나 되고 과거를 치유하고 용서했을 때 가능할 수 있다라고 그래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려고 난리를 치는지……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을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노덕술과 김원봉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인정하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상욱 위원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보훈처가 갑자기 이제는 막 그냥…… 보훈처장님 아까 그렇게 막 격해 가지고 그러시는 것 처음 봤는데요.

보훈은 절대적 개념이고 상대적 개념이 아니다, 뭐 보험회사 직원이십니까? 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 된다, 통일부장관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 보훈이라는 게 상훈법 2조에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법 1조에는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국가는 어디입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대한민국입니다.

○지상욱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상욱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훈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더 충격적인 것은 ‘북한 정부에 기여한 걸로 검토하지 말라는 것 안 된다’, 아까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인 기억 못 할 거예요. ‘북한 관계에 있어서 6·25 관여했다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6·25요?

○지상욱 위원 예, 그렇게…… 나중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다 적었어요,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보훈처장이 북한 정부에 기여한 것을 검토하지 말라는 게 안 된다, 기준을 그렇게 해 놓고 그런 식으로 지금 유권해석을 하고 또 북한 관계에 있

어서 6·25에 관여했다는 것으로 서훈을 못 하게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동안 보훈처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본인데 오늘 자리 보니까 대한민국 보훈처장도 아니고 보훈처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사퇴를 요구하고 싶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법무공단에 법률자문 의뢰했어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상욱 위원 거기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김원봉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서훈의 영예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면 서훈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김원봉 씨에 대해서 서훈 추천을 하면 서훈의 영예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 노’로 답해 주세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김원봉 씨, 지금 법 기준이 이렇고 그동안 이렇게 답변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겁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됐고.

4월 1일 날 독립기념관에서 약산 김원봉 독립운동에 관한 현재적 검토, 비공개 토론회 준비하고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있습니다.

○지상욱 위원 왜 비공개로 합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아요, 몰라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토론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비공개라는 것은 지금 알았고요.

○지상욱 위원 주제가 ‘해방 전 독립운동, 해방 후 정치활동, 김원봉 포상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이렇게 비공개로 국민을 숨겨 놓고 국회도 숨기면서 토론회 하면서 아니라고 하면서 절차적으로 수순을 밟아 가고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위원들도 다 이념적으로 좌경화, 편향된 사람들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학술토론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을 서훈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국민적 의견이 달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상옥 위원 심사기준이 그렇지 않은 분에 대해서 심사기준도 고쳐지지 않았는데,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훈처는 그분을 또 주기 위해서 토론회를 연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지상옥 위원 아니, 그게 적절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상옥 위원 아니,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서훈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알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지상옥 위원 아니, 기준이 그런데 공무원이, 국가 공직자가 기준이 그렇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기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런 대답을 하세요? 참 이것 대단하네. 저는 지금 아주 놀라요, 점점 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기준을 바꿨는데 현재로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국민적 여론이, 대다수가……

○지상옥 위원 대다수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대다수가 그런 의견을 쫓기 때문에……

○지상옥 위원 그래요? 대다수가 쫓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런 의견을 쫓기 때문에……

○지상옥 위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대다수가?

○위원장 민병두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저는 위원님……

○지상옥 위원 보훈처장님, 대다수가 쫓어요, 그거를?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상옥 위원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 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지상옥 위원 아까 경찰에 있는 조서에도 못 믿겠다고 하는 분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민병두 지상옥 위원님, 보충질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옥 위원 대다수 의견이 있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의견, 저희들한테 들어온……

○지상옥 위원 근거를 대 보십시오. 저한테 근거를 대 봐 주세요. 오후에 근거를 대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

○지상옥 위원 근거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속기록 한번 들여다 보시고 본인이 정말 무슨 압박 때문에 이렇게까지 변해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말씀하신 그 압박이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여기까지 일단……

보훈처장님!

○지상옥 위원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걸 갖고 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근거를 주세요, 오후에.

○위원장 민병두 지상옥 위원님!

○지상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두 보충질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의 성일종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성일종 위원 보훈처장님, 지금 보훈처가 보훈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지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 합니다.

○성일종 위원 보훈 대상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보훈 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 뭐한 사람들이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입니다.

○성일종 위원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지요? 있기까지,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성일종 위원 이런 원칙이 흔들릴 때 누가 잡

아야 하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가 잡아야 됩니다.
- 성일종 위원 기관장이 잡아야 하지요? 제일 책임이 크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 성일종 위원 동의하시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동의합니다.
- 성일종 위원 그러면 6·25가 남침입니까, 북침입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남침입니다.
- 성일종 위원 그렇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 성일종 위원 6·25를 통해서 피해 보셨던 6·25 참전용사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살아 계시는 분이 지금 10여만 명 정도 되시고요, 전체……
- 성일종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피해자들이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 성일종 위원 그분들이 살아 계신데 그와 대칭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훈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다친 것에 대해서……
- 성일종 위원 대칭되시는 분들.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대칭되시는 분들이요?
- 성일종 위원 예.
6·25의 피해자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참전용사만 따지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 성일종 위원 그런데 남침에 조력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분들에 대해서 서훈을 한다든지 검토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사람들은 현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성일종 위원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
- 성일종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까 증언은 자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 성일종 위원 증언이 자료 아닌 것이 확실합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증언이 자료가 아닌 게 아니라 증언에 의한 거라고 했습니다, 기록이 아니고.
- 성일종 위원 좋습니다. 증언에 의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신뢰 못 한다는 게 맞습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이 엇갈리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성일종 위원 그러니까 증언이 자료로서 존재할…… 증언이라고 하는 게 재판에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에 영향을……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증거 될 수 있습니다.
- 성일종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만들어졌던 기록들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인정을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인정하실 겁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증언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증언이 심사에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성일종 위원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6·25 전 남로당에 활약을 했다라고 그러는 성북경찰서의 기록이 있어요, 조사보고서가. 가평경찰서에 1945년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가평경찰서의 사실조회확인서가 국가기관 양쪽에 있어요, 두 군데 경찰조사가. 이러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장님의 답변이 명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6·25의 피해자들이 있고 국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선양하기 위해서 특히 국가보훈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록들을 증언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 처장이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 대답해 보세요.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언 내용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 성일종 위원 상반되는 게 뭘니까? 상반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증언도 있습니다.

○**성일종 위원** 아니, 복수의 기록이 있어요, 국가기록이. 그러면 복수의 국가기록을 안 믿고 다른 상반되는 것 뭘 믿으시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복수의 기록이라는 것이……

○**성일종 위원**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 있잖아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간첩으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기록 자체……

○**성일종 위원** 이 기록을 안 믿으면……

1분만 더 주세요.

이 기록을 안 믿으면 어떤 기록을 믿으실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찰서 두 곳에서 만들어진 이 기록을 믿지 아니하면 어떤 기록을 믿으실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기록이 기록 자체가 상반된 증언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그러면 그것 말씀해 보세요. 상반된 기록이라고 했잖아요.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증언이 있다 그게 뭘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건 제가 오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처장님, 처장님은 국가공무원이세요. 대한민국의 기둥을 잡아 가는 보훈의 사령탑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 없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일종 위원** 그러면 국가기록을 더 신뢰하실 겁니까, 개인 가족들의 기록을 신뢰할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기록 자체가 증언에 의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일종 위원** 오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저한테 바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반된 기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보훈처장님, 회의의 원활한 진

행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고 손용우 지사에 관련된 심사 기록을 얘기하시는 거였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병두** 예, 아까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담당 국장이 누구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이요?

○**위원장 민병두** 자료제출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보훈예우국장 임성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자료가 심사위원 명단하고 회의록 그리고 경찰서의 사실조사회보서 3건을 제출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3건을 지금…… 심사위원 명단하고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조회기록서, 보훈처장께서 계속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그것은 1차 자료가 아니고 증언이다, 가령 남로당 입당원서랄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증언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입니까,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예, 사실조사회보서. 같은 회보서 내에도 A라는 분은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반면에 또 B라는 분의 증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러니까 가평경찰서의 사실조회 기록이 있고 성북경찰서의 사실조회 기록 두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또 내무부 치안본부……

○**위원장 민병두** 내무부 치안본부까지 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예.

○**위원장 민병두** 그래서 지금 성일종 위원님은 가평하고 성북이 같다, 같은 진술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에 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훈처장님?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장 민병두** 가평경찰서 것과 성북경찰서 것과 치안본부 조희서 세 가지가 있는데 일치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제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중간에 확인하는 겁니다.

○**성일종 위원** 제출해 주세요. 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민병두** 제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제출하는 여부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 경찰서의 사실조사 회보서는 보훈처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작성한 내용이고……

○**정태욱 위원** 그걸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진태 위원** 그걸 달라고요.

○**국가보훈처보훈예우국장 임성현** 그리고 그 내용상에도 보면 유족 간에 또 증언자 간에 다툼이 일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태욱 위원** 그것 어쨌든 간에 달라는 거지요. 못 주겠다는 말인 것 같은데.

○**성일종 위원** 처장님께서 오후에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시면 돼요.

○**위원장 민병두** 앓아 계시고요.

제가 아까 보훈처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아마 이런 우려가 생긴 거예요. 개인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심사위원의 앞으로 발언할 때 독립성 같은 것, 심사를 할 때 독립성 문제랄지 또 기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리고 제출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막상 제출하기로 해 놓고 나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오후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할 수가 있어서 제가 아까 애초에 세 분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국가보훈처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법률적 제약 때문에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협의해 달라고 아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려했던 바가 다시 또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하신 원칙적으로 제출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유효하다고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추구를 하는 바이고, 오전 회의 끝나고 나서 잠깐 만나 가지고 간사님들하고 보훈처장하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의 최운열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태욱 위원** 위원장님,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민병두** 오늘 의사진행발언 벌써 오전에만 다 숫자를 쓰셨어요.

어떤 것……

○**정태욱 위원** 세 가지를 확실히 주겠다고는 안 주겠다고는 지금 답변이 안 돼……

○**위원장 민병두** 지금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아까 오전에 제가 확인했던 원칙은 유효한 거고 제출하겠다고는 답변도 유효한 것이며, 그것에 관해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세 분 간사님하고 보훈처장하고 오전 회의 끝나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고 아까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최운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운열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훈처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오늘 위원님들 질의하고 처장님 답변 듣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훈유공자 선정 기준에 대한 질의에 ‘간첩은 안 된다. 김일성은 안 된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북한 국방장관을 역임하고 노동상을 역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이런 범주에 듭니까, 안 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

○**최운열 위원** 그런 것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안 하시니까 지금 혼선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북한의 국방장관, 노동상을 역임한 분하고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분은 간첩이나 김일성 그 기준에 드나오, 안 드나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의 기준으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안 되는 것 분명하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혼선이 없어질 것 같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 기준으로 보면 김원봉 선생 같은 분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 기준이 흔들리니까 지금 혼선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조금 답하시기 편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3월 초에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입니다.

보셨나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봤습니다.

○최운열 위원 왜 저런 광고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군경미망인회, 의용군동지회, 4개의 단체에서 보훈처장님 해임을 권고하는 신문광고입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제가 들어오면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몇 개의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해서 잘못된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수익사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최운열 위원 그 수익사업의 내용이 불용품이라든지 장례식장 사업금 그런 것들이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런 것을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불법입니다.

○최운열 위원 불법은 불법대로 처리하시지 처리 안 하니깐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 안 하시는 과정에서 어느 한 분이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재향군인회입니다.

○최운열 위원 그것은 재향군인회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비슷한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어떤 기준이 있으면 분명하게 그때그때 적용하시고 처리를 잘 해 주시면 되는데 그런 것 차일피일 계속 미루다 보니까 목숨을 잃게 되고……

목숨을 잃게 된 그 부인께서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읽어 보셨나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셨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최운열 위원 처리해 줄 방법이 없나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불법은 불법대로 법대로 처리하세요. 불법으로 인한 소득은 그 사람들 소유가 아니잖아요, 불법이라면?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것을 환수해서라도 뭘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밟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최운열 위원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국가보훈병원이 6개 있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6개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위탁병원은 몇 개 있나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삼백칠십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니까 위탁병원을 운영하는 목적은 뭔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 보훈병원에서, 6개 밖에 없기 때문에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위탁병원……

○최운열 위원 너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위탁병원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최운열 위원 그러면 위탁병원에 가든 보훈병원에 가든 대우는 똑같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게 차별화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훈병원에 가면 60~90% 할인을 해 주는데 위탁병원 가면 안 해 줘요, 감면 진료 대상자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저도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예.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당시 재정소요를 감안해서 보훈병원하고는 달리 연령이나 보상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최운열 위원 재정소요도 중요하겠지만 기준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보훈병원 가면 되고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의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위탁병

원을 운영하는 게 목표인데 위탁병원 가면 혜택을 안 준다, 이거 국민들이 동의하시겠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거리상……

○최운열 위원 처장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불만의 소지를 없애 주시는 게 우리 처장님의 하실 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운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오전에 김선동 위원님, 추혜선 위원님 두 분 질의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봉을의 김선동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선동 위원 김선동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부터 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너무 심각해서 보훈처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오전에 보훈처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이념적 기준 위에 분명히 서 계시지 못하다, 아주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응답 하는 과정에서 보면 간첩 혐의가 있다는 증언과 없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있다는 증언은 경찰 쪽에서,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는 증언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가기관으로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있다는 쪽에 방점을 뒀야 되겠습니까 혐의가 없다는 쪽에 방점을 뒀야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심사위원회……

○김선동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부분입니다.

○김선동 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답변하신 보훈처장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에 서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이 아까 질의 과정에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변경을 했는데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지만 않았으면 남로당 활동도 친북

활동도 다 면죄부를 주고 독립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저희는 그런 상황으로 기준을 완화시켰고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선동 위원 그런 기준으로 완화시킨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선동 위원 저는 대단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상임위 끝나신 다음에, 오전 끝나신 다음에 지금 하신 발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그 말씀을 유효하게 하실는지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장님 제가 여러 가지로 오후에 질의드릴 게 있어서 이만큼 하고요.

국조실장님, 지난번 작년 12월 27일 상임위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부처 전수조사 한번 해 봐라, 국무조정실장이니까.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우리 국조실 소관 경인사와 관련해서, 물론 전체 이사장님은 성경룡 이사장님이시지만 국무조정실장이 이거 한번 체크해 보고 드러나는 문제, 문제성으로 보도되는 게 있으면 확인하고 체크해보시는 게 당연한 소임이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김선동 위원 그렇습니다.

PPT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손기웅 통일연구원장과 경인사 사무총장 간의 대화록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 12월의 퇴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인사수석실에서 통보를 받았고 청와대가 개입이 돼 있고 그전에는 일팔로 나왔다.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적어도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기 저렇게 입증돼 있습니다. 속기록예요, 그렇지요? 저거 지금 확인 안 하셔도 전에 보도 나오는 과정에서 다 확인하셨던 거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엇그제 보도 내용, 오늘 아침에 나온 내용인 것 같은데요.

○김선동 위원 그거 보고 아셨습니까? 그 전에

는 모르셨습니까?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김선동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조실 사퇴 현황 좀……

넘겨 봐 주세요.

국조실 산하의 경인사 보면 전체가 지금 스물네 군데인가요, 거기 중에 저희들이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네 분의 원장님 말고는 임기를 채우신 분이 없다. 그런데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카운트를 해서 14개 기관 블랙리스트성 경질 외압이 들어간 리스트 대상들이 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 다 체크하고 계셨습니까? 경인사에 맡겼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아니요, 그 출연연구기관 기관장에 대한 블랙리스트는 이것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김선동 위원 그렇습니까? 관심 안 가졌다 그러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보면 블랙리스트 사건이라 그래 가지고 처벌한 것을 보면 찍어내기를 하려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성분·성향·소속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 있었고 그러고 그 사람들 찍어내기 과정에서 개입을 한 사람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에 와서는 정상적인 행위라고 그러합니다. 체크리스트라고 그러합니다. 어느 정권이 하면 체크리스트고 어느 정권이 하면 블랙리스트입니까? 지금 현 정권은 보니까 체크리스트라고 쓰고 블랙리스트라고 읽습니다.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이 정말 내로남불이라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전이 잘못됐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로 처벌을 하고 그랬으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 정부는 응당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 때도 그랬다, 관행이었다’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블랙리스트 처벌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정권이 과거랑 똑같고……

제가 볼 때는요, 국조실장이 한번 단답으로 해 봐 주십시오. 박근혜정부 때 낙하산이 많았습니까, 이 정부 지금 현재 낙하산이 많습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낙하산의 정의를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정의를 핑계 대시겠지요.

이 정부가 훨씬 많습니다. 언론도 그렇게 지적

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 놓고서 과거는 블랙리스트고 지금은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항변하시면 그것은 스스로의 도덕적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의당의 추혜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위원 보훈처장님, 마지막 질의니까 힘내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추혜선 위원 지금 상임위 질의 이렇게 겪으면서 제가 한번 동의를 구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지금 남과 북이 만나고 미국과 북한이 만나면서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간첩 운운하면서 지금 상임위가 과거에 발목 잡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단의 낡은 기준이 있다면 평화와 통합의 기준으로 바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동의합니다.

○추혜선 위원 그래서 저는 처장님이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입장을 그렇게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 저는 공정성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의 아픈 흔적을 걷어 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보훈처장의 처신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손혜원 의원을 직접 만나서 완화된 과정을 설명해 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신 적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사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

○추혜선 위원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 생각하셔야지요. 그것을 누가 그냥 아무 일 없듯이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겠습니까? 저는 경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적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면 될 일을 굉장히 정쟁으로 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훈처장님 처신이 지금 그 어르신

의 공적에도 누가 된다는 것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을 일부러 설명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요 면담을 요청을 해서……

○추혜선 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처장님, 그렇더라도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어야지요. 이게 특권과 특혜로 비쳐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사과를 안 하시고 자꾸만 그렇게 하셔서 일을 키우십니까?

깊이 좀 유념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무총리비서실장님, 독립운동가 최운산 장군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예.

○추혜선 위원 역사에 굉장히 밝으신 분이니까 알고 계실 겁니다. 북간도에서 사업을 통해서 쌓았던 모든 재산을 무장 독립군대를 창설하는 데 투입해서 독립군 연합부대인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예,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지금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의 바탕이……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그렇지요, 물적 기반이 되었지요.

○추혜선 위원 예, 그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공적으로 인해서 최운산 장군이 1977년 독립유공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한북로독군부의 총살림을 맡아 고생하셨던 최운산 장군의 부인 김성녀 여사의 공적은 아직도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후손들이 진정을 내고 있고 저도 이첩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위원 잘 들어보세요.

제가 후손들에게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손해원 의원 부친과 같이 몇 번을 떨어지면서 신청을 계속해 왔어요. 그런데 기준 완화 보도는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혜와 불공정의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실장님께서 잘 유념해 주시고요.

이 공정성 시비가 당사자로부터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누구도 섭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추혜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성 독립운동가는 조연에 불과했다, 시대적인 그런 정서도 있었겠지만 적극적으로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그래서 유관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조명을 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김성녀 여사와 같은 분들에 대한 발굴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적심사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이것이 과거의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 속에서만 소극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정운현 제가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요, 그런 의견을 드릴 수 있고……

○추혜선 위원 같이 정부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보훈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여성 독립운동가에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추혜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자료요구 관련해 가지고요. 의사진행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저희가 사실은 첫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계속 상임위 전체 질의가 약간 좀 도돌이표 식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자료요청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오후 질의 시작 전에 제출을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임성현 국장인가요, 보훈예우국장? 오후 질의 시작 전까지 자료 꼭 제출해 주세요. 알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민병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예,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이렇게 지체되어서 한국당 간사로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오전에 질의할 때 저희 당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피우진 처장께서 제출하시겠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질의 마칠 때까지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제가 오전에 제출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그 제출록은 공훈록으로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의 부분에 개인정보 관련해서와 회의록은 할 수 없고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공훈록에 대해서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위원장 민병두** 공훈록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국회법에 기초해서 또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해서 또 국민의 의혹이 큰 사건이니 만치 이것이 오늘 정무위에서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 가능하면 자료를 제출해 달라’, 거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못 받은 것이 아마 3건이 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 명부하고 그다음에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3개의 경찰기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증언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상 자료를 제출하기로 하고 나서 보면 나중에 무엇을 제출하기로 했느냐와 또 개인정보법이니 등등에 기초해서 어디 어디를 가리고 제출할 수 있느냐를 갖고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에 협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얘기를 했을 때 피우진 처장님께서 아마 포괄적으로 동의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런데 막상 또 정회 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 아직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오전에 제가 주의하고 촉구하고 당부했던 대로 국민적인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는 국회법에 기초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

구합니다. 일단 촉구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1차 질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 처장께서 답변했던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지요. 왜 이분이 여섯 번 탈락했는데 일곱 번째 회의에서 다시 결정 과정이 반복됐느냐, 그 대화하고 토론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출해 달라,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무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익명으로 처리해서 내달라.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셨고. 여기에서 어떤 자료가 왜 헛갈리지요?

그러니까 공훈록이 아니라 그 공훈록을 만들기 위해서 회의했던, 그 심사위원들이 회의했던 대화록 있잖아요. 저희가 그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고 위원장님도 그게 맞다, 대신 익명 처리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라.

처장이 답변하셨잖아요, 제출하겠다고?

○**위원장 민병두** 예.

○**김용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 지금 무슨 있지도 않은 공훈록 얘기를 하고 다시 헛갈리는 얘기를 해요? 적절하지 않잖아요, 회의록을 제출하면 되지 익명으로.

○**위원장 민병두** 제가 오전에도 질의에 그런 촉구를 하고 당부를 했던 것은 어쨌든 야당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가 또 분명해져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맞는 지적이든 틀린 지적이든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여간 제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전해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민병두** 예, 전해철 위원님.

○**전해철 위원** 오전 회의 경과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즉 의정생활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왔던 정부의 지금까지 입장, 관행,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요건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보훈처에서 이 서훈 관련 회의록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저도 얼마 전에 이에 관련해서 안장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줄 것을 엄청 요구하다가 못 받은 적이 있어요. 딱 하나 이유였거든요. 그 회의에 참석하는 심사위원들이 만약에 회의록이 공개된다면 앞으로 독립성에 대해서 치명적인 지장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 회의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 가지고 저도 요구를 하다가 결국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훈처장한테 물어보기를 선례가 있냐, 사례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보훈처장이 그런 사례가 전혀 없고 제가 이야기 들었던 그런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깐, 아무튼 최종 결론이야 간사분들께서 내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정은 충분히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민병두** 이 의사진행발언이 이제 계속 되면, 지금 전해철 위원님이 발언을 해 가지고 다시 의사진행발언이 꼬리를 물 수밖에 없게 되어 버렸는데……

그러니까 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회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제가 입장을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일단 진행하고 합시다.

○**김성원 위원** 아니, 1분만 딱 정리하고 할게요.

○**전해철 위원** 또 그러면 의견 하지.

(「그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유의동 위원** 아니, 이것 1차 질의 마치고 논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민병두** 예, 그러니까 일단 유의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살펴보시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세 분이 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유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동 위원** 국무조정실장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98명입니다. 잘 아시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유의동 위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

는데 특별히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안 낳겠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어도 못 낳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난임 부부들이네요.

난임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 해에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인원수 말씀이십니까?

○**유의동 위원** 예.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좀 가르쳐 주십시오.

○**유의동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에만 난임 진료자가 22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현재는 얼마나 더……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요.

이 난임 진료가 상당히, 난임 시술을 받고 이러한 것들이 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비용도 상당히 비싼데—난임을 극복하고 싶은 이 마음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마음인지?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유의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올해 저출산 예산이 23조 4000억 원인데요, 난임 지원 예산이 184억 원입니다. 애시당초 정부안에는 1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 속에서 몇몇 뜻있는 위원들께서 노력을 기울이셔서 이게 184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래도 전체 저출산 예산 중에서는 이게 0.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산율도 낮은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정부가 난임 지원에 소극적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유의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을 갖고 싶어하는 분들께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유의동 위원** 저는 시간이 짧으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난임 인터넷카페 회원 1000여 분을 대상으로—이게 카페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니까 과학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1000분 이상이

응답을 하셨는데 이 시술경비를 충당하는 방법이 카드 할부, 대출, 금융서비스가 근 50%에 다릅니다, 45.5%니까. 자신의 저축이나 월급 이런 것으로 한다는 분이 22.7, 17.1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마음은 간절하시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부 예산이 한정이 돼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시더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정부가 저리대출 융자사업, 민간에서 자금을 빌리되 이자 차액을 메워 주는 이차보전사업 이런 것들을 해 주기를 원해요.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사업들 중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차보전사업이라든지 저리대출 융자사업이라든지요.

이런 유사한 대부사업을 난임 부부 대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때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복지부나 관련 부처하고 방법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또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금을 만들든지, 그래서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취급하는 서민금융의 한 형태 햇살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난임을 지원하는 금융론사업 이런 것들도 애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가능한지 여부를 부처들하고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지난 3년간 정부가 저출산에 쓴 예산이 69조 원, 70조 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도입되고 있지만 사실은 어찌 보면 저출산의 늪에 더욱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 이유가 명확한 목표 없이 그냥 돈 액수로만 이것을 해서 그렇지 진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가 무감각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난임과 관련해서 금융제도에 대한 관련 부처, 관련 부처란 보건복지부·금융위 뭐 이런 게 되겠지요. 제가 내일 금융위 업무보고 시간에도 금융위원장한테 적극적으로 주문을 할 텐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국조실

에서 맡아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예전에는 총리 산하로 있다가 지금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이 됐지만 실무적인 이런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제도의 틀을 만들고 이런 데 대해서는 국조실이 훨씬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챙겨 보겠습니다.

○유의동 위원 이것 챙겨만 보시지 말고 ‘적극적’이라고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유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국무조정실장님도 답변을 하실 때 딱 명쾌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가급적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책질의를 준비해 가지고 정부에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 알리고자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만 대답을 하면 뭐 동의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분명하게 답변할 것은 답변하고 또 논쟁할 것은 논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의 김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보훈처장님,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0년에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에게 건국훈장을 그리고 2012년에는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에게 국가보훈처가 애국장을 추서하였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맞는 얘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병욱 위원 이 훈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박탈당한 상태입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자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이었습니다. ‘공훈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다. 따라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공적을 줬는데 그때 심사할 때도 본인의 공적만 가지고 심사하지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은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이 답변에 대해서 지금 현 보훈처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김병욱 위원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논리로라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어머니 강반석도 독립유공자 대상이 된다는 논리의 전개가 가능하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병욱 위원 참 국민의 정서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마는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입각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고 타인과의 연관성을 묻지 않고 본인의 그 당시의 독립운동 사실 유무만 갖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러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고 이후에 친북활동을 하거나 또는 북한에 갔거나 또는 전향을 했거나 전향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을 묻지 않았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석이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다고 봅니다.

○김병욱 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국민의 정서와 괴리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이러한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2017년 7월 달에 보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 것이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김병욱 위원 용역을 줬는데 이전에 서훈 줄 때와 용역 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네 가지가 있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에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포상하는 게 주……

○김병욱 위원 김형권과 강진석은 다 보니까 일찍 병사를 했더라고요.

제가 위키트리에서 찾은 겁니다. '김형권은 조선의 독립운동가이며 국민부 소속으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1930년 9월에 체포되어서 서대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의 삼촌인 김형권 독립운동사고요.

그다음에 '김일성의 외삼촌인 강진석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31살 때 김일성의 나이 아홉 살이던 1921년에 일제에 의해서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 병이 악화되어 가출옥을 하였고 1942년에 병사하였다' 그런 거지요.

이후에 북한 정권의 탄생과 이런 부분에는 전혀 무관한, 단순히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명박 정권 때 서훈을 줬고 박근혜정부 국가보훈처장도 다른 사람과 연계 짓지 말고 그분의 공적으로서 판단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김일성의 삼촌·외삼촌에게 서훈을 줘라, 주지 마라 얘기도 하지 않았었겠지요? 단순하게 공적심사위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과 전문성으로 결론 난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병욱 위원 지금 공적심사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도 똑같은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우리 국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 더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정권에서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기준을 새로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을 우리가 실시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그리고 정권이 바뀔수록 인해서 새로운 사관을 심기 위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과거 정권의 서훈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판단을 해 왔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처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전에도 그런 사실이 있고 지금 바뀐 것은, 바뀐 거라고는 아까 얘기드린 네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도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처장이 관여한 적이 없다, 같은 맥락의 이야

기고요.

그다음에 심사기준을 저희들이 바꿔서, 사회주의 계열의 활동을 한 사람도 일부 넣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손용우 지사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된 배경이지요.

○**김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민병두** 짧게 해 주십시오.

○**김성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그냥 서훈 관련 회의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 질의응답 시간 때 심사위원 목록 그다음에 회의록 그다음에 경찰조사 회보서,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때 보훈처장님께서서는 주신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간사 간 협의해서 심사위원 목록은 그것은 아까 전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한 거였었습니다. 해 가지고 회의록하고 회보서는 이따가 저희 보충질의 시작하기 전까지 지금 보훈처가 갖고 있는 거니까 꼭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처장 답변 중에 이런 것 있습니다, 위원장님. 공훈록이라는 단어는 오전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나는 공훈록이라고 들어 가지고 공훈록은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이것은 저는 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한 경고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민병두** 제가 아까 주의를 이미 했습니다.

○**김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이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훈처장님, 지금 답변을 하실 때 되게 신중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국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훈처에 압수수색이 언제쯤 들어왔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압수수색이요?

○**김성원 위원** 예. 보훈처 압수수색 안 받았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들어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3월 20일 날이요? 압수수색 받은 사유는 뭐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고발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김성원 위원** 보훈처 내에서는…… 범위는 어디까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범위라고 하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보훈처 압수수색 들어와 가지고 보훈선양국 그 한 국에 대해서만 받았습니까 아니면 어느 국, 어디를 압수수색 들어왔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손혜원 의원의 심사 관련해서 관련 국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관련 국이 어느 국이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우국입니다.

○**김성원 위원** 보훈예우국?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성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병욱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우리가 서훈 개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개선에 이런 관련 검토를 해 갖고 했는데 기존하고 크게 네 개의 차이가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처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사회주의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포상……

○**김성원 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면 기준 개선 검토, 그러니까 포상 심사기준 개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하라고 했느냐면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을 검토한다’ 이게 네 번째 개선사항이고, 행적 불분명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독립운동 이후 행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서훈으로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했느냐고 하면 ‘독립운동 이후 행적의 결격사유 미확인 시 포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포상을 검토한다, 광복 후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사회주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다른 발언입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전혀 다른 건 아니고요. 어떻게 돼 있느냐……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발언을 잡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니까 사회주의 앞의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이었고요. ‘광복 후 사회주의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그것은 전체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활동을 했더라도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거나 적극 동조 안 하면 사안별로 포상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접 기여하지 않은 경우는 포상을 검토한다’ 이렇게 개선안이 나온 거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 사회주의 활동에……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다음에 국무조정실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국무조정실 내에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공 분야에서부터 갑질을 선도하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 내에서 갑질은 어디가 제일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생각 없이 하는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실장님 친정이 제일 심합니다, 기재부·행안부. 행안부는 인사권을 가지고 기재부는 예산권을 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 4월 달 정부부처 예산심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처와 6월 달에 기재부랑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기재부의 공무원들 간의 갑질이 엄청 심하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좀 선도적으로 국무조정실장이 잘 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친정이라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저는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감사합니다.

이어서 인천 계양구갑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처장님, 2013년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공직심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심사내용 및 심사의 본질 등을 고려하면 심사위원들의 대립된 의견이나 최종 심사결과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 그 공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외부에 부당한 압력 내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릴 사항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심사위원으로서도 공개될 경우에 대한 심리적 압박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걸로 판단돼서 이걸 익명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소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알고 계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회의록의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로 인해서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같이 비교·교량하여 볼 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판례를 알고 계시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유동수 위원**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유동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께서 ‘손용우 선생을 간첩으로 볼 만한 행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유동수 위원** 그 반대되는 내용도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반대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제가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인적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고 1차 진술을 한 사람에게 의하면 6·25 전후에 부역하였다고 진술하고 또 2차 진술 시에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을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부역 사실을 주장을 하는데 근거는 가평경찰서, 얘기하셨던 1990년 5월 31일 사실조사사회보서에서 6·25 북괴 치하 시 본적지에서 부역 활동한 상황은 발견치 못했다고 또 증언을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세 명이 6·25 당시 고향에 거주치 않아 부역 사실이 없을 거라고 또

진술을 한 바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손용우 씨가 6·25를 전후해서 부역 및 지하 암약 좌익분자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고요. 또 한 사람은 6·25 전부터 손용우는 성북구에 거주하며 사찰계의 정보원으로 활동한 자로 부역 사실 없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수 위원** 사찰계의 정보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마지막에 사찰……

○**유동수 위원** 사찰계 정보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유동수 위원** 제 생각에는 손용우 씨와 같이 활동했던 경찰 직원의 말이 손용우 씨가 사찰 활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사찰계 정보원으로 일을 했다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부역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수 위원** 오히려 사찰계 활동을 하면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부역 사실이 아니고……

○**유동수 위원** 오히려 부역자들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런 의미입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얘기한 간첩활동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러면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다음에 심사기준이 되게 엄격하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민원이나 국회나 언론에서 그간의 심사기준이 너무 엄격해 가지고 굉장히 개선의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됐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유동수 위원** 용역 발주를 했고 그 내용이 9월 19일 날 국무회의에……

1분만 더 주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일부는……

○**유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자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을 9월 19일 날 국무회의에 보고를 하고,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유동수 위원** 그다음에 2017년 11월 21일 날 연구용역보고서가 발표가 되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유동수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4월 달에 심사기준을 개선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런데 손혜원 의원님이 처장님 부른 건 2월 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2월 달에 불렀습니다.

○**유동수 위원** 2월 달에 손혜원 의원님이 처장님 뵙자고 한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유동수 위원** 그래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 당시에는 어떤 내용으로,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면담을 요청한 건 아니고요. 그냥 면담을 하자고 요청을 했고 제가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셔서 심사기준을 지금 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해 보셔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동수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서울 양천구울의 김용태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용태 위원** 시작하기 전에, 문서 처장한테 주세요.

그 문서가 보훈처에서 생산해서 김종석 의원실에 공식으로 전달된 문서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뒤의 관계자 와서 확인해 주세요.

맞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김용태 위원**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아버지 손용우 씨, 여섯 번 심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탈락되었습니다. 첫 번째, 손용우 씨는 조선노동당에 가입하고 활동했

다. 두 번째, 1947년 입북 후 간첩이 되어 남파되어 간첩활동을 했다. 세 번째,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도 살았으며 6·25 당시 조선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했다. 사회주의 활동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 수립에 엄청나게 기여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여섯 번 하는 동안에도 손용우 씨는 인우보증인을 내세워서 이것을 반박해요. 반박한 내용이 뭐냐? 손용우 씨는 해방 후 좌익 사회주의 운동을 하기는 했지만 전향해서 오히려 한국 경찰의 사찰 요원—즉 프락치지요—으로 활동하면서 6·25 당시 북한 공산당 부역자 소탕에 공을 세운 사람이다, 이러니 사회주의 활동을 했지만 한국 경찰에 협력해서 공산당 부역자 소탕에 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인우보증인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그런데 보훈처는 안 받아들였지요.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데 바뀌면서 보훈처에서 내세운 기준 하나는 달랑 이거예요, 사회주의 활동 인정, 북한 공산 정권 수립에 기여한 것은 불인정.

그러면 여기에서 손용우 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한 건 맞다’ 본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만 ‘나는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찰에 협조했다’, 이 인우보증인…… 그런데 경찰은 그렇지 않다, 간첩활동 했고 보안법 위반으로 구류도 살았고 6·25 당시 조선노동당 세포책으로 활동도 했다, 이렇게 경찰서나 치안본부에서 다 조사해서 확인을 한 내용이거든요.

일곱 번째, 지금 뭐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조서 얘기는 안 듣고 원래부터 계속 손용우 씨가 내세웠던 인우보증인, 즉 간첩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경찰에 협조한 정보 사찰 요원이었다, 이것을 인정해서 이분이 북한 정권의 수립에 기여한 것은 아니더라도 해서 이분을 이번에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것 플러스 조금 아까 제가 여러 분의 진술 내용을, 증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태 위원 이번에 7차 조사 때는 2명의 인우보증인 이외에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 가지고 인우보증인을 더 추가했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김용태 위원 잠깐만,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경찰 조서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반박하는 인우보증인 2명의 주장에 맞았어요. 그런데 보훈처는 이때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일곱 번째 하려면 경찰 조서, 인우보증인 2명 말고 추가로 누가 있었냐 이 말이에요. 추가의 자료나 추가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판단이잖아요. 경찰 조서는 못 믿겠고 인우보증인 얘기를 믿겠다, 이런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네 번째 얘기했던,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던 사회주의 활동을 했던……

○김용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분에 대한 판단은 경찰 조서 대 인우보증인 2명의 얘기거든요. 어차피 보훈처에서 우리 의원실에 보내온 자료니까 인우보증인 얘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우보증인 이태준, 인우보증인 이태운, ‘이 사람은 간첩활동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경찰에 협조했다’ ‘손용우 씨는 공산당 소탕에 공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간첩이냐?’라고 반박을 계속해 왔는데 6차 때까지는 이 사람들 인우보증인 얘기 안 듣고 보훈처가 경찰 조서를 믿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일곱 번째 바뀌었을 때는 추가의 다른 어떤 사태가 있었느냐고요? 보훈처에서 추가 조사한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인우보증인이 세워진 건지, 어때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새로운 인우보증인이 있다기보다는 안 된 이유가 앞에서……

○김용태 위원 잠깐만. 왜 그래요?

인우보증인 2명의 진술은 분명히 이 사람이 간첩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아요, 인우보증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가 대답했는데 6차 때까지는 경찰 조서를 믿고 인우보증인 얘기는 제척을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 조서를 제척하고 인우보증인 얘기를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된 거 아니에요?

인우보증인 얘기를 믿게 된 그 사유를 얘기해주세요. 경찰 조서를 제척하고 여섯 번 동안 해왔던 것을 뒤집고, 우리가 그것 알고 싶은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인우보증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인우보증…… 네 번째의 기준들이 생기면서……

○김용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주의 하는 건 오케이, 북한 공산 정권

에 협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본인들이 변경해서 내세웠잖아요. 경찰 조서에서는 ‘간첩활동 했다’ 그런데 인우보증인들은 ‘아니다. 오히려 간첩활동이 아니라 부역자들을 잡아내는 경찰 협력자였다’, 두 가지가 충돌했을 때 여섯 번 동안 한 번도 인정을 안 했던 말이에요. 이번에 인정한 것은 사정변경 없이 경찰 조서 제척하고 인우보증인 얘기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우보증인 얘기를 인용하게 됐는지,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토론했는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의 자료를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이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것 추가질의 때 제가 강력히 따질 테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그러니까 인우보증을 한 게 바뀐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인우보증한 내용이 서훈 할 수 있고 서훈 할 수 없는……

○김용태 위원 잠깐요,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인우보증 내용이 어떻게 바뀌어? 제가 말씀드릴까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아니, 그러니까 인우보증이 바뀐 게 아니라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인우보증들이, 안 됐던 사안들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용태 위원 정말 큰일 날 소리하고 계시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심사기준이……

○김용태 위원 심사기준 좋아요. 본인도 해방 이후 사회주의 활동을 했다, 그런데 전향해서 경찰 협력자가 됐다, 이게 인우보증인들의 얘기에요.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아니라 좌익활동 했고 전향한 게 아니라 아예 간첩활동 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인우보증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전향해서 경찰 협력자가 됐다, 이 얘기를 채택한 거라니까. 추가로 나온 게 없다니깐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이게 인우보증의 기준이 바뀌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추가질의 때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병두 이어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의 전해철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전해철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보훈처장님, 정리를 해 갖고 그냥 간명하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취지는 기준이 바뀌어서 이전에 인우보증인에 의한 이야기든 또 조사에 대한 내용이든 바뀐 기준대로 채택이……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적용을 했다……

○전해철 위원 적용했다 이거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 이야기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제 말씀은 시간대별로 하고 또 기준은 언제 바꿨고 과정에서 진술이 어떤 것, 이것 해 가지고 아무리 세계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위원장 민병두 질의하십시오.

○전해철 위원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전해철 위원 국조실장께 질의하고요, 경인사 이사장과 보훈처장은 참고로 보십시오.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영장 기각된 판결 이유를 봤습니까, 국조실장님?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보도 내용으로 봤습니다.

○전해철 위원 핵심이 뭐예요? 그냥 기억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이야기드릴 테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전해철 위원 다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이 뭐예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일괄사직서 징구하고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 이 부분이 희박해 보인다……

○전해철 위원 방어권 보장이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것은 법리적인 판단인 거고요.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증거인멸의 이런……

○전해철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 수요 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에 사직 의사를 확인한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핵심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위촉되거나 이전 정부에서 했던 블랙리스트와 견줘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일괄해서 공개적으로 사직서를 받았습시다. 당시 경인사 산하 연구기구의 장 열여덟 분이 일괄 사표를 내서 그중에 일부를 갖고 사직시키고 또는 연임을 시켰던 거예요. 일괄 사직에 대해서 절대 위촉되거나 ‘우리 위법 아니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 표적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사권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직권남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국조실장 대답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안 사안에 대해서 원칙이든 원리든 좀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구별해서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판결문을 하나 더 인용하면 그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하여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다’, 영장담당 판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국가 운영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됐던 기관장에 대해서 일괄 사직도 아니고 적절한 인사권 범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블랙리스트에 견줘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조실장이 절대 위촉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를 바라구요.

보훈처장께, 아까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 다 채우고 3개월 더 근무한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게 무슨 남용이 됩니까? 남용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못 하는 경우에 형식적인 요건이라도 시작되는데 3개월 더 근무했잖아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다음에 김옥이 보훈공단 이사장의 경우에는 왜 사퇴 압력을 받고 그랬어요? 사유가 뭐였어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사퇴 압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사퇴 압력은 제가 왔을 때 공단 직원들한테 사퇴 압력을,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공단의 성과연봉제를 좀 무리하게 했다 그래서 노조가 반발하고 노조에서 사퇴 압력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거기에 보훈처가 관여한 것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관여한 것 없습니다.

○전해철 위원 그리고 이분 역시도 3년 임기 마치고 1년 연임을 했고 또 9개월 정도 근무하고, 연임 1년의 3개월 정도 남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권이 위촉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튼 기관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오히려 더 유의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인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이사장님이 오시기 전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그리고 영장전담판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국정농단에 관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아요? 감찰해서 사유가 나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훨씬 더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민병두 1차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제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윤경 위원 제윤경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민주당 여성 의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캠페인을 함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로 칸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전쟁 종식 선언을 요구할 것에 대한 결의안이 얼마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작 대한민국의 의회에서는 아직 냉전도 끝내지 못한 것 같은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지금 먹고사

는 게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연 국민들의 이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국무조정실장님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하고 버닝썬 사건에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은 여성으로서, 특히나 여성이 끔찍한 성범죄의 대상이 됐고 이것이 권력과 유착이 돼서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고 조작되고 있다는 것에…… 사실은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 만큼의 아주 커다란 끔찍한 스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치권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진상조사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렇지만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원과 관련해서 7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을 하고 계시고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철저한 진상조사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해서 국민의 거의 70% 가까운 분들이 잘된 조치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잘 계획이 되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아시겠지만 총리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고 대통령께서도 행안부·법무부장관 그리고 또 국세청까지도 한 점의 의혹 없이 이 내용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조사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제윤경 위원 ‘대검 진상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좀 연장됐지만 여전히 짧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국무조정실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과 질문인데요.

국무조정실에서 갈등관리 과제를 선정하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권익위를 통해서 국민고충 민원처리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게 국무조정실의 갈등관리 과제의 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요. 과정 자체가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어떤 것은 갈등관리 과제로 국무총리실에서 다루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안들은 권익위 차원에서 고충처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권익위 차원에서 고충처리로 다루어져서 문제가 잘 해결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러 부처가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민감한 갈등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권익위에 있고 또 어떤 것은 국무총리실에 있고, 이러면서 사실은 이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경중이 있더라, 이걸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최소한 이 고충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민원을 제기했던, 국민 다수의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처리 결과가 아니라면 이후에 그것이 다시 심의를 거쳐서 갈등관리 과제가 된다는가 이러한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갈등관리 과제의 선정과 관리에 대해서 지금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갈등관리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조실장이 각 부처 차관들하고 논의를 하는데 여러 부처가 소관이 관련이 돼서 종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갈등의 폭이나 깊이가 좀 크다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한 28개 정도는 합동과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정도가 좀 낮은 것은 부처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요, 선정 과정이 제가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권익위의 고충처리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예, 아마 고충처리에서 논의가 된 과제라도……

○제윤경 위원 이게 연계가 돼야 되지 않는가……

○국무조정실장 노형욱 중요한 갈등과제 같으면 저희가 관리하는 갈등과제로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권익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윤경 위원 그러니까 개별 사안을 제가 건의 드려서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라 저는 하나의 연결프로세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

다. 이 고충처리 과정도 결국 여러 부처의 갈등을 조정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권익위가 그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보고·전달 이런 정도의 체계로 끝나고 그리고 형식적인 결과 도출, 이렇게 끝나 버려서 고충처리를 기대했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낙담하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고충처리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출해내지 못했을 때 넘기는 방안들, 이렇게 연계할 수 방안에 대해서 저는 과정을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분 더 쓰면 안 될까요?

○위원장 민병두 1분 더 쓰셨는데? 그냥 마이크 없이 마무리하시지요.

○제윤경 위원 보훈처장님한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이상으로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훈처장님,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서 ‘김종석 의원님실에 제출한 자료가 맞냐?’ 하고 확인한 문건, 그것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해서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선노동당 가입 활동, 입북 간첩활동, 보안법 위반 구류, 6·25 세포책 활동, 아까 이런 내용들을 김종석 의원님실에 제출했다는 겁니까? 그건 뭘 제출한 거지요? 회의록입니까? 어떤 게 제출되었다는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증언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러니까 증언 내용이 가평경찰서, 여기저기 경찰서에 증언된 내용을 압축해서 약술해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회의록을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 조서를 제출한 겁니까? 어떤 걸 읽은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정태옥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하나 보내 드리세요. 이것 똑같은 것을 보내 주세요.

○위원장 민병두 왜냐하면 자료제출이면 제가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갖고 정부한테 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받은 게 어떤 건지 잘 몰라 가지고.

만약에 무슨 회의록을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 것을 안 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압축본이라고 한다면 어떤 압축본인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정태옥 위원 그것 말고 김종석 위원님이 받은 3페이지짜리 자료를 복사해 가지고 빨리 드리세요.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것이 어떤 겁니까?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증언을 한 내용을 압축해서 드린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증언한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서 제출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예.

○이학영 위원 저희도 좀 주십시오.

○김진태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민병두 제가 내용을 확인 좀 하고 나서요.

그러니까 ‘증언한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까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줄 수 없다 하는 것과는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그것을 기왕 제출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아까 다섯 가지의 사유를 즉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또 제출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실 분 있나요?

김진태 위원님 하시고……

○정태옥 위원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민병두 들어보시면서 비슷한 거면 뒤의 분들은 알아서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우선 아까 세 페이지짜리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즉 지켜봤는데요. 지금 이런 겁니다. 보훈처장의 손해원 의원 부친에 대한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이런 쟁점으로 가는 겁니다. 왜 꼭 여당 의원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특례 의혹이 혹시 있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추가로 하필이면 그분이 지금 간첩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큰일이 아니냐,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같이 뒤섞여 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자료가 현재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와중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 또 가장 최근에 보훈처에서 세 쪽짜리 이 자료를 쥐서 ‘무슨 포섭이 됐니, 지하활동을 했니’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일부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사실조회 회보를 내놓아 봐라, 우리도 같이 보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훈처장은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것은 우리들이 다 봤다, 그래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주 굉장히 지금 무슨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식으로 이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고 도대체 이 진상을 제대로 알기가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발 달라’ 이렇게 된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제가 더 얘기를 하면 보훈처에서 직접 작성했다는 내용 중에 입북했다, 남과되었다, 접선했다는 내용이 있으면서 인우보증서라는 게 있어서, 지금 보훈처장 답변은 이게 간첩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로 내놓았다는 건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로 내놓았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꼭 반대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원장 민병두 그래서 어떤 걸 요구하시는지?

○김진태 위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추가질의를 합니다.

○김진태 위원 얘기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반대 증거가 아니고, 좌익활동이나 간첩활동을 하다가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 때부터 전향을 해서 이러이런 반대활동을 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2개가 꼭 배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통째로 우리가 봐야지 알 수가 있다, 어느 한쪽만 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고……

○위원장 민병두 다시 한번 자료……

○김진태 위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자료를 내주지 않고 이 질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고, 또 하나는 다른 기관장들도 여기 지금 와서 같이 모여 있는데 우리 야당 위원들의 질의는 지금 보훈처장한테 집중되어 있고 이런 기형적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청문회를 제안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여야 간사 간에 날짜를 따로 잡아서 이렇게 중요한 현안이 있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보훈처장만 가지고 별도의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서 이런 것을 밝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야 간사 간에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번갈아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위원님 아까 신청하셨지요?

○이학영 위원 저희는 다른 질의 할 게 많아서 사실 이 부분은 자료 준비를 못 했는데 김종석 간사님께 드린 자료가 있으면 이제라도 저희들도 함께 보고, 저희들은 직접 안 보고 이야기하니까 확실치 않으니까 그 자료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병두 성일종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 정태욱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성일종 위원 보훈처장님, 자료를 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특권과 반칙으로 춤추고 있는 보훈처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수덕사에 가면 우리나라 불가의 가장 큰 어른 중의 한 분인 만공스님이 계세요, 만공선사. 아실 거예요. 보훈처 직원들 잘 알 거예요. 보훈처 직원들 잘 들으세요.

이분이 만해 한용운 선생이 독립운동 할 때 군자금을 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자금을 대 줄 때 군자금은 기록에 안 남잖아요, 비밀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같이 그 밑에 있던 스님께서 인우보증을 다 썼고 비디오로 이것 다 증언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자손도 없고 사회주의 어떤 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위원장 민병두 만공선사님 얘기 좀 줄이시고.

○성일종 위원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를 해 달라고 하는 게 불교계의 오랜 소망이었고 요청사항이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안 받아들였거든요. 손혜원 의원이 처장을 만나고 나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국가적인 위신과 관련되는 일이고 보훈과 관련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장 이야기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다, 기준 하나 바꾼 거다, 사회주의운동을 했더라도 유공자를 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준 하나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 바꾸기 전에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경찰이 갖고 있는, 가평경찰서, 성북경찰서, 본청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북한에 넘어가 가지고 협력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남파되었다라고,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기록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님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래 놓고 지금 보훈처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료를 내놓으세요. 그 자료를 가져야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아, 올바른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손도 없는 만공선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안 해 주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료를 내놓으세요.

○위원장 민병두 다음에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가나 이 자료라는 것이 경찰청에서 작성한 문건이기 때문에 이걸 경찰청도 아니고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월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도 회의록 공개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에 의한 보호된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서로 비교했을 때 앞으로의 업무 수행에 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존경하는 김종석 간사님께 드린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민병두 다음에 정태욱 위원님.

○정태욱 위원 지금 쟁점이 아까 보훈처장께서는 '서훈 기준이 바뀌었다' '서훈 기준이 뭐냐?'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한 사람도 서훈 대상자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 얘기했는데 지금 쟁점은 해방 이후에 사회주의 활동을 했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아까 보훈처장이 오전에 답변하실 때 간첩활동을 하거나 북한 정권에 직접적인 공헌을 했느냐의 여부는 여전히 현재 기준으로 안 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그러면 해방 이후에 직접적으로 간첩활동 내지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적으로 공헌했느냐의 여부가 김종석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 자료입니다. 가평경찰서하고 성북경찰서하고 치안본부의 사실조회 회보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못 내놓겠다고 이야기하는 중요한 기준이 개인 사생활 보호하고 공정한 공적심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못 했다 하는 것은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에 있어서는 그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 자료하고, 두 번째 가평경찰서·성북경찰서·치안본부가 제출한 자료 이것하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반론자료로 내놓았다고 하는 인우보증자료 이 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제까지 이야기하신 대로 하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나머지 2개는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당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식자료로 됐으면, 그 첫 문서를 생산하는 기관은 가평경찰서·성북경찰서·치안본부지만 이것이 공적심사위원회 회의의 기초자료로 됐으면 이 서류는 다시 국가보훈처의 공식서류가 된 거예요. 그것은 문서 생산부서가 아니라 새로 됐으면 당연히 서류를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생활 보호나 공적심사자료나 그런 논란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가평경찰서·성북경찰서·치안본부에서 낸 보훈처의 심사자료는 보훈처의 문서가 맞기 때문에 보훈처 자료로서 내놓으라는 것하고, 인우보증도 이미 본인 이름까지 다 내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익보다는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사회적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공적심사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놓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지금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 활동 내용에 대한 판단이 다른 상황하에서 공적심사와 관련된 기초자료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익과 또 한편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에 기초해서 이런 것이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그래서 법익에 침해가 있다는 두 가지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청문회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간사님

들께서 협의를 계속해 주시고 일단 2차 질의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위원님.

○김종석 위원 지금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 위원장님께서 보훈처장에게 자료제출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질의가 끝날 때까지 본 위원과 한국당 위원들은 기대했고 양해했는데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처의 이러한 태도에 굉장히 실망했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과 한국당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심사위원 명단, 회의록 그리고 경찰이 작성한 사실조회 회보서입니다. 인우보증자료는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익명 처리해서 제출해 달라, 심사위원명단은 안 받아도 좋다’까지 아까 간사 간에 회의 협의하면서 양해를 한 바 있습니다. 아마 처장님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명 처리된 회의록조차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더 이상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는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유의동 간사님.

○유의동 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핵심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씩이나 탈락한 대상자, 그 대상자의 자녀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 국회의원이 일곱 번째 신청을 앞두고 해당 기관의 장을 불렀고 만났고 그 이후에 기준은 낮춰졌고 그 대상자는 독립유공자가 다시 됐고,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의문을 갖고 그 의문을 풀고자 하는 분들이 그 의문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해요. 그러면 그 의문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보훈처장께서 얘기하시는 게, 보훈처에서 이야기하는 게 개인정보 어쩌고 뭐 그러시는데 여기에는 다 나와 있네요? 요약본에는 나와 있어요. 요약본에는 나와 있는데 원본으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심각합니다. 앞뒤가 계속 바뀌어요, 말이. 그러니까 의문은 더 커지는 겁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병두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자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어떤 원칙의 일관성 같은 것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본 거였고 또 기본적으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재차 삼차 요청했던 것인데 정부의 생각하고 여야의 생각이 다르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22인)

| | | | |
|-------|-------|-------|-------|
| 고 용 진 | 김 병 옥 | 김 선 동 | 김 성 원 |
| 김 용 태 | 김 정 훈 | 김 종 석 | 김 진 태 |
| 민 병 두 | 성 일 종 | 유 동 수 | 유 의 동 |
| 이 태 규 | 이 학 영 | 장 병 완 | 전 재 수 |
| 전 해 철 | 정 태 옥 | 제 윤 경 | 지 상 옥 |
| 최 운 열 | 추 혜 선 | | |

○청가 위원(2인)

정 재 호 주 호 영

○출석 전문위원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조 용 복 |
| 전 문 위 원 | 이 상 현 |
| 전 문 위 원 | 오 창 석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 | |
|---------------------------|-------|
| 실 장 | 노 형 옥 |
| 국 무 1 차 장 | 최 병 환 |
| 국 무 2 차 장 | 차 영 환 |
| 국 정 운 영 실 장 | 임 찬 우 |
| 정부업무평가실장 | 이 종 성 |
| 규 제 조 정 실 장 | 이 련 주 |
| 경 제 조 정 실 장 | 최 창 원 |
| 사 회 조 정 실 장 | 윤 창 렬 |
| 정부합동부패예방 | 홍 승 옥 |
| 감 시 단 부 단 장 | 민 지 홍 |
| 세종특별자치시 | 안 택 순 |
| 시정 | 문 영 기 |
| 조 세 심 판 원 장 | |
| 대 테 러 센 터 장 | |
| 국무총리비서실 | |
| 실 장 | 정 운 현 |
| 민 정 실 장 | 남 평 오 |
|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
| 위 원 장 | 장 완 익 |

| | |
|---------------|-------|
| 부 위 원 장 | 최 예 용 |
| 상 임 위 원 | 문 호 승 |
| 상 임 위 원 | 양 순 필 |
| 상 임 위 원 | 황 전 원 |
| 사 무 처 장 | 오 지 원 |
| 국가보훈처 | |
| 처 장 | 피 우 진 |
| 차 장 | 이 병 구 |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 이 성 춘 |
| 보 상 정 책 국 장 | 장 정 교 |
| 보 훈 예 우 국 장 | 임 성 현 |
| 복 지 증 진 국 장 | 황 원 채 |
| 제 대 군 인 국 장 | 김 광 우 |
| 보훈단체협력관 | 전 중 호 |
| 국 제 협 력 관 | 김 주 용 |
| 대 변 인 | 김 대 원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양 봉 민 |
| 이 사 장 | |
| 독립기념관 | |
| 관 장 | 이 준 식 |
| 사 무 처 장 | 신 용 관 |
| 88관광개발(주)사장 | 임 동 훈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
| 이 사 장 | 성 경 룡 |
| 사 무 총 장 | 길 흥 근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 조 황 회 |
| 국 토 연 구 원 장 | 강 현 수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 이 재 영 |
| 산 업 연 구 원 장 | 장 지 상 |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 조 용 성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 동 욱 |
| 기 획 조 정 실 장 | |
| 통일연구원장직무대행 | 전 병 곤 |
| 한 국 개 발 연 구 원 | |
| 원 장 | 최 정 표 |
| 국제정책대학원장 | 유 종 일 |
| 한국교육개발원장 | 반 상 진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부원장 | 박 순 경 |
| 한국교통연구원장 | 오 재 학 |
| 한국노동연구원장 | 배 규 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 김 창 길 |
| 한국법제연구원장 | 이 익 현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조 흥 식 |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 권 인 숙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김 유 찬 |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 나 영 선 |

| | |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 송 병 국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 양 창 호 |
| 한국행정연구원장 | 안 성 호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 한 인 섭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윤 제 용 |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 박 소 현 |
| 육아정책연구소장 | 백 선 희 |

【보고사항】

○의안 회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김병욱·강훈식·강병원·안민석·이찬열·안호영·금태섭·임종성·윤후덕·서형수·김경협 의원 발의)

12월 26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김승희·박덕흠·김상훈·최도자·유재중·정유섭·김명연·윤한홍·이은권·이종명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27. 유동수·박찬대·윤후덕·이규희·최운열·이학영·박홍근·김영주·김병욱·전재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7. 김병욱·이찬열·안호영·임종성·윤후덕·서형수·전재수·이기구·정춘숙·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2월 28일 회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진태·유기준·이종명·여상규·김영우·이장우·이진복·박대출·엄용수·金成泰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유동수·백혜련·금태섭·박찬대·김병기·표창원·최운열·이동섭·박인숙·서삼석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이학영·고용진·김해영·김현권·

민병두 · 박광온 · 박홍근 · 송옥주 · 우원식 ·
유동수 · 이춘석 · 윤영일 · 윤호중 · 이원욱 ·
전해철 · 최인호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고용진 · 박정 · 이수혁 · 박찬대 ·
김병기 · 박홍근 · 윤영일 · 최재성 · 윤후덕 ·
김성수 의원 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28. 정부 제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정재 · 추경호 · 광대훈 · 주광덕 ·
김석기 · 박대출 · 민경욱 · 김도읍 · 김성원 ·
박덕흠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김병욱 · 강훈식 · 어기구 · 정춘숙 ·
김해영 · 고용진 · 이학영 · 임종성 · 안호영 ·
서형수 · 윤후덕 · 이종걸 · 안민석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31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추혜선 · 심상정 · 윤소하 · 김종대 ·
이철희 · 민병두 · 박정 · 이학영 · 김종훈 ·
이정미 · 고용진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이종배 · 함진규 · 정태욱 · 추경호 ·
홍일표 · 광대훈 · 정진석 · 김석기 · 윤종필 ·
이학재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유동수 · 이개호 · 김병기 · 백혜련 ·
박정 · 이찬열 · 박주민 · 박인숙 · 강길부 ·

김경협 의원 발의)

갈등기본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영우 · 장제원 · 유승민 · 김현아 ·
주호영 · 정병국 · 박명재 · 임이자 · 홍문표 ·
성일종 · 경대수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이학영 · 윤영일 · 송옥주 · 박광온 ·
김해영 · 윤호중 · 우원식 · 이원욱 · 이춘석 ·
김현권 · 박홍근 · 최인호 · 유동수 · 고용진 ·
민병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유동수 · 이찬열 · 백혜련 · 송갑석 ·
이동섭 · 이규희 · 유은혜 · 강길부 · 송기현 ·
제윤경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
홍철호 의원 발의)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
홍철호 의원 발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이은재 ·
홍철호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이상 13건 2019년 1월 2일 회부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김도읍 · 이진복 · 김재원 · 한선교 · 박덕흠 · 김현아 · 장석춘 · 김정재 · 홍철호 · 이은재 의원 발의)

2019년 1월 3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박용진 · 이종걸 · 김해영 · 이학영 · 박찬대 · 심상정 · 김영주 · 추혜선 · 이춘석 · 강병원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2. 이학영 · 윤영일 · 송옥주 · 박광온 · 김해영 · 윤호중 · 우원식 · 이원욱 · 이춘석 · 김현권 · 박홍근 · 최인호 · 유동수 · 고용진 · 전해철 · 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일 회부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홍일표 · 박찬대 · 민경욱 · 정진석 · 안상수 · 김기선 · 김진태 · 윤상현 · 홍문표 · 정우택 · 최교일 · 이주영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제윤경 · 김병기 · 백혜련 · 박찬대 · 박주민 · 이종걸 · 안호영 · 우원식 · 한정애 · 신동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김병욱 · 김해영 · 이학영 · 어기구 · 정세균 · 유동수 · 윤후덕 · 안호영 · 임종성 · 정춘숙 · 이찬열 · 민병두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홍일표 · 안상수 · 김기선 · 김진태 · 윤상현 · 홍문표 · 정우택 · 민경욱 · 최교일 · 박찬대 · 이주영 의원 발의)

이상 4건 1월 7일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2019. 1. 7. 박대출 · 윤상직 · 최교일 · 성일종 · 정갑윤 · 김정재 · 박성중 · 이은권 · 박완수 · 조원진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9. 1. 7. 장병완 · 전재수 · 김병욱 · 고용진 ·

황주홍 · 우원식 · 김종희 · 이용주 · 정인화 · 강훈식 의원 발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1. 7. 김관영 · 정병국 · 이동섭 · 김삼화 · 권은희 · 정운천 · 김수민 · 오신환 · 임재훈 · 채이배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8일 회부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 · 최도자 · 이찬열 · 장정숙 · 정동영 · 이연주 · 이용주 · 이종걸 · 정인화 · 박주현 의원 발의)

2019년 1월 10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9. 1. 10. 김종석 · 김정재 · 김성원 · 박덕흠 · 김선동 · 김용태 · 추경호 · 김명연 · 김규환 · 박명재 · 김승희 · 심재철 의원 발의)

1월 11일 회부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1. 성일종 · 이명수 · 정인화 · 원유철 · 정세균 · 김성찬 · 윤종필 · 박덕흠 · 이만희 · 황주홍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김정재 · 조훈현 · 정갑윤 · 곽대훈 · 추경호 · 이학재 · 정종섭 · 박명재 · 박대출 · 김석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14일 회부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2019. 1. 14. 이철희 · 최재성 · 신동근 · 이동섭 · 송갑석 · 이종걸 · 서형수 · 김병기 · 박용진 · 추혜선 · 신창현 · 이찬열 · 박홍근 · 김경진 · 백혜련 · 서영교 · 고용진 · 이상현 · 금태섭 · 윤관석 의원 발의)

1월 15일 회부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김경진 · 이찬열 · 유동수 · 강길부 · 박주민 · 윤종필 · 윤영일 · 조경태 · 장병완 · 황주홍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하태경·심재철·권은희·유의동·김관영·김삼화·김수민·임재훈·이혜훈·박재호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1. 15. 박성중·김승희·강길부·윤영석·홍문표·황영철·이명수·이은재·김성찬·김학용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16일 회부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

(2019. 1. 17. 김석기·김정재·정갑윤·김재경·김현아·김승희·김성찬·곽상도·김성원·이철규 의원 발의)

1월 18일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18. 신상진·정태욱·김상훈·정양석·추경호·이종명·정유섭·윤종필·이완영·이채익·정종섭·윤상직 의원 발의)

1월 21일 회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9. 1. 21. 김선동·김용태·김규환·김정훈·김종석·김성원·성일중·추경호·정태욱·경대수·이철규 의원 발의)

1월 22일 회부됨

국가미래대응기본법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9. 1. 8. 정갑윤·강석호·김명연·이채익·박맹우·조경태·문진국·김정재·김석기·원유철·이종명·김재경 의원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2. 전재수·최인호·박재호·윤준호·김해영·신창현·서형수·이찬열·김철민·김정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월 23일 회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서형수·서영교·전재수·원혜영·

신동근·이용득·김현권·민홍철·이상헌·유승희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서형수·서영교·전재수·원혜영·신동근·이용득·김현권·민홍철·이상헌·유승희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추혜선·윤소하·심상정·이정미·이철희·김병관·박정·김종훈·김종대·이학영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고용진·김종민·윤관석·김종희·정인화·윤영일·민홍철·윤준호·이후삼·이수혁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4. 고용진·김종민·금태섭·윤관석·김종희·정인화·윤영일·민홍철·윤준호·이후삼·이수혁 의원 발의)

이상 5건 1월 25일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1. 28. 전재수·신동근·김경협·이원욱·박찬대·설훈·신창현·김병욱·김해영·최인호·이찬열·김병기·박재호·윤준호 의원 발의)

1월 29일 회부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민병두·최운열·고용진·이원욱·유동수·강훈식·전재수·김해영·안호영·제윤경 의원 발의)

1월 31일 회부됨

國家再建最高會議布告 第12號 폐지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중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預金凍結의 一部解除 폐지법률안(김중회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중회·강훈식·윤준호·유성엽·장병완·박지원·손금주·임종성·이찬열·황주홍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찬열 · 황주홍 · 김종희 · 김병욱 · 전혜숙 · 윤관석 · 위성곤 · 이동섭 · 정인화 · 윤후덕 · 김삼화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신창현 · 이용득 · 정세균 · 전재수 · 윤준호 · 서삼석 · 표창원 · 김성환 · 김영주 · 한정애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황주홍 · 박주현 · 김중로 · 장병완 · 이찬열 · 윤영석 · 정동영 · 안민석 · 김중희 · 최도자 의원 발의)

이상 5건 2월 1일 회부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박성중 · 이종구 · 이명수 · 홍문표 · 박덕흠 · 하태경 · 박대출 · 이종배 · 송희경 · 이은재 의원 발의)

2월 7일 회부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2. 7. 김광수 · 박지원 · 김중희 · 유성엽 · 정동영 · 장정숙 · 천정배 · 장병완 · 조배숙 · 박주현 · 이춘석 · 정운천 의원 발의)

2월 8일 회부됨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8. 전재수 · 이원욱 · 신동근 · 김해영 · 신창현 · 박찬대 · 이찬열 · 김철민 · 이종걸 · 김한정 의원 발의)

2월 11일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김정훈 · 엄용수 · 정세균 · 추경호 · 정갑윤 · 유재중 · 김병욱 · 이동섭 · 김도읍 · 윤종필 의원 발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채이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1. 채이배 · 김삼화 · 최도자 · 임재훈 · 오신환 · 김수민 · 이태규 · 김동철 · 박주선 · 주승용 · 권은희 · 김관영 · 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12일 회부됨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이석현 · 김무성 · 윤일규 · 김정우 · 정세균 · 유승희 · 안호영 · 김철민 · 김병기 · 박광운 · 원혜영 · 천정배 · 남인순 · 설훈 · 임종성 · 유성엽 · 박홍근 · 이종걸 · 백재현 · 김경협 · 김상희 · 이상현 · 이재정 · 정동영 · 김영호 · 박재호 · 우원식 · 송갑석 · 이인영 · 강창일 · 조배숙 · 기동민 · 송영길 · 노웅래 · 이진복 · 이채익 · 정우택 · 김성원 · 김승희 · 김선동 · 송희경 · 이종구 · 이현재 · 박성중 · 박명재 · 박덕흠 · 김성찬 · 이명수 · 김상훈 · 이주영 · 강석호 · 성일중 · 여상규 · 김한표 · 강석진 · 정양석 · 정병국 · 이동섭 · 김동철 · 김학용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9. 2. 12. 원혜영 · 신창현 · 김병기 · 민병두 · 김경협 · 이석현 · 금태섭 · 송옥주 · 최운열 · 김철민 의원 발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2. 전해철 · 이학영 · 최인호 · 박찬대 · 윤관석 · 이재정 · 황희 · 유동수 · 김종민 · 김영주 · 민병두 의원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2. 전해철 · 이학영 · 최인호 · 박찬대 · 윤관석 · 이재정 · 황희 · 유동수 · 김종민 · 김영주 · 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3일 회부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3. 김광수 · 황주홍 · 정동영 · 윤소하 · 박지원 · 김종민 · 이찬열 · 유성엽 · 김중희 · 장병완 의원 발의)

2월 14일 회부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14. 임재훈 · 주승용 · 김관영 · 하태경 · 이찬열 · 김삼화 · 이동섭 · 최도자 · 김수민 · 백재현 의원 발의)

2월 15일 회부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유동수 · 전재수 · 박찬대 · 원혜영 · 송영길 · 김해영 · 송석준 · 이개호 · 고용진 ·

이학영·박용진 의원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5. 전재수·박찬대·김병기·이원욱·신창현·이종걸·서형수·김철민·김해영·이찬열 의원 발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2019. 2. 15. 김종민·표창원·박주민·윤후덕·신창현·고용진·김해영·박찬대·한정애·정인화 의원 발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5. 윤일규·안호영·기동민·백혜련·안민석·강훈식·전혜숙·이규희·정세균·신동근·이학영·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8일 회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김종석·박명재·이종명·박덕흠·김승희·김선동·송희경·김정재·유기준·윤한홍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김종석·박명재·이종명·박덕흠·김승희·김선동·이학재·송희경·김정재·유기준·윤한홍 의원 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추혜선·고용진·김성원·김종대·민경욱·박찬대·성일종·심상정·유동수·윤상현·윤소하·이완영·이은권·이정미·정태욱 의원 발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18. 유동수·백혜련·고용진·김병기·김승희·민홍철·이동섭·지상욱·이학영·이찬열·민병두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19일 회부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심재권·심기준·이후삼·서삼석·박정·신창현·위성곤·박완주·김진표·윤일규·백재현·권미혁·금태섭·김철민·김민기·윤관석·김병관·김상희 의원 발의)

2월 20일 회부됨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0. 김종석·유의동·김선동·김성원·정갑윤·이종배·유기준·김규환·윤한홍·김현아·김도읍·이태규 의원 발의)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0. 우원식·김병기·윤일규·최재성·신창현·제윤경·김영춘·김영주·김한정·송옥주·안민석·노용래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득 의원 대표발의)

(2019. 2. 20. 이용득·소병훈·이인영·박홍근·송기현·이종걸·정세균·김병기·문진국·박재호·김상희·김정우·윤관석·임종성·송옥주·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21일 회부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김경진·장정숙·천정배·조경태·이찬열·윤후덕·윤종필·윤영일·김삼화·정동영·정인화·황주홍·신용현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1. 김성원·곽대훈·김명연·김선동·김순례·김정재·박명재·이은권·임이자·정유섭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2일 회부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2. 추혜선·김병관·김종대·김종훈·박정·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철희·이학영 의원 발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2. 추혜선·김병관·김종대·김종훈·박정·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철희·이학영 의원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추혜선·김병관·김종대·김종훈·박정·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철희·이학영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추혜선·김병관·김종대·김종훈·박정·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철희·이학영 의원 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추혜선·김병관·김종대·김종훈·박정·심상정·윤소하·이정미·이철희·이학영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박정·송영길·박찬대·김병기·이수혁·어기구·이규희·송갑석·신창현·표창원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박정·송영길·박찬대·김병기·이수혁·어기구·이규희·송갑석·신창현·표창원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박정·송영길·박찬대·김병기·이수혁·어기구·이규희·송갑석·신창현·홍의락·표창원 의원 발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2. 이태규·이동섭·김수민·추혜선·박명재·채이배·금태섭·엄용수·오신환·이찬열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

(2019. 2. 22. 박정·송영길·박찬대·김병기·이수혁·어기구·이규희·송갑석·신창현·표창원 의원 발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상 5건 2019. 2. 22. 정부 제출)

이상 15건 2월 25일 회부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상훈·김승희·추경호·김정훈·이종배·정태욱·홍문표·박인숙·이완영·김영우·송언석 의원 발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상훈·김승희·추경호·김정훈·이종배·정태욱·홍문표·박인숙·이완영·김영우·송언석 의원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상훈·김승희·추경호·김정훈·이종배·정태욱·홍문표·박인숙·이완영·김영우·송언석 의원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9. 2. 25. 김상훈·김승희·추경호·김정훈·정태욱·홍문표·박인숙·이완영·김영우·송언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6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이찬열·황주홍·전혜숙·이동섭·김종희·김병욱·유승희·김삼화·김철민·위성곤 의원 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9. 2. 26. 유의동·김관영·주승용·유승민·이동섭·김삼화·김종석·이태규·하태경·박인숙·채이배 의원 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6. 홍익표·황희·전재수·송갑석·이재정·최인호·서영교·이춘석·김경협·김민기 의원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6. 김해영·서형수·박재호·최재성·김종훈·전재수·남인순·윤호중·최인호·이학영·안민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2월 27일 회부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완수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박완수·엄용수·강석진·김도읍·김상훈·박순자·김석기·추경호·정종섭·

성일종 · 주호영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병기 · 신창현 · 김영진 · 최재성 · 백혜련 · 이상현 · 김영호 · 윤후덕 · 이수혁 · 이용득 · 표창원 · 김정우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회부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8. 전재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찬열 · 최인호 · 박재호 · 윤준호 · 김해영 · 최재성 · 이원욱 · 서형수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민병두 · 임중성 · 김민기 · 최재성 · 김경협 · 백혜련 · 유동수 · 김태년 · 송옥주 · 심기준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4일 회부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5. 이학영 · 김영진 · 김현권 · 박용진 · 백혜련 · 윤영일 · 윤일규 · 윤호중 · 이원욱 · 이춘석 의원 발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5. 고용진 · 최재성 · 윤후덕 · 유동수 · 박홍근 · 이수혁 · 김철민 · 남인순 · 김병욱 · 기동민 · 주승용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6일 회부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이종배 · 정유섭 · 김성원 · 장성춘 · 곽대훈 · 김상훈 · 김승희 · 윤한홍 · 박완수 · 최연혜 · 김석기 · 곽상도 · 민경욱 · 박맹우 · 정용기 · 홍일표 의원 발의)

3월 8일 회부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추혜선 · 심상정 · 이정미 · 김종대 · 윤소하 · 이학영 · 고용진 · 표창원 · 이명수 · 민병두 · 이철희 의원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2. 김해영 · 민홍철 · 박재호 · 서형수 · 하태경 · 윤준호 · 김정훈 · 최인호 · 이상현 ·

이진복 · 장제원 · 유기준 · 제윤경 · 전재수 · 유재중 · 김세연 · 김정호 · 윤상직 · 조정태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김영우 · 김상훈 · 홍철호 · 이장우 · 박덕흠 · 백승주 · 추경호 · 윤상직 · 정양석 · 김종석 의원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2. 전재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찬열 · 최인호 · 박재호 · 윤준호 · 김해영 · 최재성 · 김철민 의원 발의)

이상 4건 3월 13일 회부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성일종 · 정태욱 · 김태흠 · 김진태 · 이종배 · 주광덕 · 추경호 · 박맹우 · 황주홍 · 이명수 의원 발의)

3월 14일 회부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2019. 3. 14. 송갑석 · 김현권 · 백재현 · 홍익표 · 서삼석 · 박정 · 설훈 · 소병훈 · 인재근 · 안민석 · 이개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15일 회부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전재수 · 신창현 · 이종걸 · 이찬열 · 김병기 · 최인호 · 박재호 · 윤준호 · 김해영 · 표창원 의원 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15. 고용진 · 주승용 · 송갑석 · 김병기 · 박정 · 이규희 · 김병욱 · 표창원 · 신창현 ·

변재일 · 이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18일 회부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2019. 3. 18. 김병욱 · 유동수 · 도종환 · 고용진 · 윤준호 · 정재호 · 이종걸 · 이용득 · 최운열 · 이학영 의원 발의)

3월 19일 회부됨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장병완 · 장정숙 · 유성엽 · 최경환(평) · 김종회 · 김정진 · 이용주 · 윤영일 · 정인화 · 김광수 · 천정배 · 박지원 · 조배숙 · 정동영 · 박주현 · 황주홍 의원 발의)

3월 2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4. 오제세 · 기동민 · 권철승 · 전혜숙 · 이찬열 · 박덕흠 · 강병원 · 이후삼 · 이명수 · 유동수 의원 발의)

12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8. 최인호 · 이상현 · 안호영 · 금태섭 · 조승래 · 윤준호 · 홍익표 · 황희 · 김해영 · 전재수 · 이후삼 의원 발의)

12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임이자 · 장석춘 · 윤종필 · 홍문종 · 원유철 · 김성찬 · 정갑윤 · 강석호 · 정태욱 · 김영우 의원 발의)

2019년 1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여수 · 순천 10 · 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

(2019. 1. 3. 김성환 · 강병원 · 고용진 · 기동민 · 김경협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영주 · 김진표 · 김철민 · 김태년 · 김해영 · 김현권 · 남인순 · 맹성규 · 박경미 · 박광온 · 박범계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설훈 · 송갑석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창현 · 안규백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동수 · 유승희 · 윤관석 · 윤일규 · 이개호 · 이상현 · 이석현 · 이수혁 · 이재정 · 이철희 · 이학영 · 인재근 · 전해철 · 전현희 · 전혜숙 · 정성호 · 정춘숙 · 조승래 · 진선미 · 최인호 · 홍의락 · 홍익표 · 김동철 · 장정숙 · 이용주 · 정동영 · 최경환(평) · 윤소하 · 손금주 · 박지원 의원 발의)

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강석호 · 김재경 · 김무성 · 정양석 · 이정현 · 원유철 · 정진석 · 추경호 · 정유섭 · 정갑윤 · 이학재 · 이종배 의원 발의)

1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이석현 · 윤일규 · 정세균 · 유승희 · 안호영 · 김철민 · 김병기 · 변재일 · 송기현 · 박광온 · 조승래 · 이재정 의원 발의)

2019년 1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19. 1. 23. 위성곤 · 홍영표 · 우원식 · 서삼석 · 노웅래 · 이찬열 · 백재현 · 김병기 · 신창현 · 송옥주 · 박찬대 · 유동수 · 김철민 · 홍의락 · 어기구 · 김종민 의원 발의)

1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윤일규 · 권미혁 · 조승래 · 김상희 · 박홍근 · 정춘숙 · 안호영 · 신동근 · 기동민 · 남인순 · 신창현 · 서삼석 · 한정애 · 노웅래 의원 발의)

1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결의안

(2019. 1. 29. 이명수 · 김명연 · 홍문표 · 이완영 · 김선동 · 윤일규 · 박성중 · 이은권 · 임이자 · 박덕흠 · 김승희 · 김재원 · 김태흠 · 오제세 ·

윤종필 · 박인숙 · 유민봉 · 성일종 · 경대수 · 김용태 의원 발의)

1월 3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박완주 · 강훈식 · 권미혁 · 기동민 · 김민기 · 김병기 · 김상희 · 김철민 · 김한정 · 노응래 · 박광온 · 박영선 · 박재호 · 박정 · 박홍근 · 백혜련 · 서삼석 · 설훈 · 신창현 · 심재권 · 어기구 · 이상호 · 우원식 · 유동수 · 윤일규 · 윤준호 · 이규희 · 이용득 · 이인영 · 이재정 · 인재근 · 제윤경 · 한정에 의원 발의)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 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

(2019. 1. 30. 박완주 · 노응래 · 박정 · 서삼석 · 이상호 · 심재권 · 이인영 · 이용득 · 이규희 · 박광온 · 이재정 · 강훈식 · 어기구 · 윤준호 · 김철민 · 권미혁 · 김민기 · 기동민 · 백혜련 · 유동수 · 윤일규 · 우원식 · 김병기 · 신창현 · 박홍근 · 김한정 · 설훈 · 한정에 · 박재호 · 제윤경 · 김상희 · 박영선 · 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2. 19. 임이자 · 윤종필 · 문진국 · 원유철 · 장석춘 · 김용태 · 광상도 · 홍문종 · 정태욱 · 송희경 의원 발의)

2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9. 2. 28. 이종걸 · 신동근 · 제윤경 · 유성엽 · 전재수 · 김경진 · 유승희 · 서형수 · 황주홍 · 안민석 의원 발의)

3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사회적경제 기본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2019. 3. 6. 강병원 · 한정에 · 박홍근 · 김정우 · 유승희 · 김태년 · 윤후덕 · 김경협 · 박용진 · 김두관 의원 발의)

3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소병훈 · 김병기 · 송갑석 · 남인순 · 윤일규 · 이용득 · 서영교 · 김상희 · 김병욱 · 변재일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병관 · 홍익표 · 이규희 · 김현권 · 홍의락 · 송갑석 · 이상현 · 이종걸 · 우원식 · 권미혁 · 이원욱 · 김정우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군비통제정책기본법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20. 최재성 · 김병기 · 신창현 · 어기구 · 박홍근 · 임종성 · 윤준호 · 김철민 · 김영호 · 기동민 · 제윤경 의원 발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2019. 3. 20. 천정배 · 권은희 · 김경진 · 김광수 · 김동철 · 김두관 · 김병기 · 김종대 · 김종희 · 박범계 · 박정 · 박주선 · 박주현 · 박지원 · 박찬대 · 서영교 · 설훈 · 손금주 · 손혜원 · 송영길 · 심상정 · 안호영 · 원혜영 · 유성엽 · 유승희 · 윤소하 · 윤영일 · 이동섭 · 이석현 · 이용주 · 이용호 · 이정미 · 이종걸 · 이철희 · 이춘석 · 인재근 · 장병완 · 장정숙 · 전해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인화 · 정춘숙 · 조배숙 · 주승용 · 채이배 · 최경환(평) · 최도자 · 추혜선 · 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